

# 함께하는 FTA

August 2016 vol.51



한·콜롬비아 FTA 발효  
콜롬비아 현지 분위기 시장 분석  
한·콜롬비아 FTA 발효의 의미와 시사점

KOREA  COLOMBIA

# 한중FTA 활용, 1380 차이나데스크에 다 있다!

'차이나데스크'는 한중FTA 활용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합니다.



## 한중FTA 활용, 차이나데스크 상담은?

국번 없이 1380

<http://fta1380.or.kr>

무역센터 트레이드타워 3층 방문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한국무역협회  
Korea International Trade Association  
KITA

글 김선녀 기자

사진 이승재 기자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 임목삼 팀장

## 원산지관리사는 융복합적 자질을 갖춘 21세기 새로운 인력이 될 것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 임목삼 팀장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원산지관리사 교육을 진행해왔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국내 유일의 원산지 정보 수집·분석 기관으로 FTA 관련 정보가 가장 많이 집중되는 곳이다. 임목삼 팀장은 지난 5년 동안 원산지 관련 교육을 전담하면서 FTA의 변화와 성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봐온 선증인이라고 할 수 있다.

“2011년 한·EU FTA가 발효되면서 인증수출자 제도의 핵심이 되는 원산지관리사의 역할이 커지고,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죠. 원산지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자나 교육 수강생이 많아지면서 2014년부터 정보원 내에 교육팀이 구축되었습니다.”

현재 원산지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대부분은 취업에 관심이 많다. 하지만 원산지관리사라는 직업의 비전은 취업을 넘어선 다음 단계에서 더 빛을 발한다.

“원산지관리사는 기업의 핵심 정보를 다루는 사람입니다. 원산지를 증명하려면 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의 제조 공정과 납품 및 조달 비용, 거래처 등의 정보를 전부 꿰차고 있어야 합니다. 그만큼 한 기업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거죠.”

기업에서 발휘할 수 있는 이러한 역량은 차후 독자적인 영업 능력으로 이어져 사설 FTA 컨설턴트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될 수 있다고 그는 말한다.

“FTA에서 말하는 컨설턴트는 ‘물류 효율화’예요. 즉, 서플라이체인을 극대화하는 거죠. 앞으로 TPP나 RCEP 같은 메가 FTA 시대가 열리면 체결 국가가 늘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기지나 수출선이 다양해지는데요, 이때 국내뿐 아니라 FTA 체결 국가 전반의 물류효율화를 위한 정보 수집과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 관리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당장의 세금이나 세율을 절감하는 것뿐만 아닌 향후의 제조기지, 원재료 소싱 단계나 지역 선정 등 기업의 장기적인 플랜까지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원산지관리사라고 하면 대부분 국제통상과 관련한 무역 지식을 일차적인 소양으로 봅니다. 하지만 원산지관리사의 궁극적인 자질은 관리하는 제품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이공계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영 마인드까지 갖춘다면 단순한 무역 마인드보다 오히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국제원산지정보원은 이러한 원산지관리사의 직업적 비전을 제시하는 동시에 기업들을 위한 무역 실무 지원 그리고 잡 매칭까지 다양한 ‘액션 플랜’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 능력의 융복합 과정을 통해 21세기의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원산지관리사의 잠재력은 앞으로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❶





24

# Contents

August 2016 vol.51



## COVER STORY

지난 7월 15일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이번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맺은 자유무역협정으로, 중남미 3대 시장으로 손꼽히는 콜롬비아 시장으로의 진출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이에 콜롬비아 시장 분석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 그리고 이번 FTA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표지일러스트 서용남

## 함께하는 FTA

발행일 2016년 8월 1일(통권 51호)

발행처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문의 044-203-4131)발행인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작협력 한국경제매거진

'함께하는 FTA'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저자의 견해로 정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FTA People

01 국제원산지정보원 FTA인재개발팀 임목삼 팀장

26 다자무역체제 표류에 보호무역의 위기까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 Issue Focus

04 한·에콰도르 SECA 추진방안 논의

28 실전 품목분류: ②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06 Global FTA News

30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삼계탕 수출을 위한 통관 제도 이해  
김기현(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08 한·몽골 FTA 추진

32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⑯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저작권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 FTA Cartoon

10 중남미 3대 시장, 콜롬비아가 열린다!  
안종만34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②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네오)

## Cover Story

### 한·콜롬비아 FTA 발효

12 남미시장을 밝히는 또 하나의 촛불 한·콜롬비아 FTA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36 FTA 사후검증tip: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⑦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14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콜롬비아 현지 분위기  
장명수(주콜롬비아 한국 대사)40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⑩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16 한·콜롬비아 FTA 발효의 의미와 시사점  
하상섭(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 Special Report

18 브렉시트가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

42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등

20 한·중 FTA 발효 6개월이 가져온 변화와 이슈

## FTA & Company

24 2016 FTA 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FTA Square

44 FTA 정보&amp;독자의 소리



6

42

글 김유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지난 7월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콰도르 산업전략조정부  
장관과 대외무역부  
장관을 차례로 만나 교육,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내용을  
논의했다.

### ① 한·에콰도르 SECA 추진방안 논의

## 성공적인 통상 위해 에콰도르와 지속적인 협력 약속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월 21일, 에콰도르 대외무역부 후안 까를로스 까시네이 칼리(Juan Carlos Cassinelli Cali) 장관과 만나, 한·에콰도르 SECA 연내타결 공감대 형성, 자동차 수입쿼터 개선노력 등 협상 진전을 이끌어냈다. 주 장관은 최근 양국 간 무역이 지난 2006년에서 2014년 사이 3배 증가하고, 지난 2016년 1월 한·에콰도르 SECA 1차 협상을 개시하는 등 양국 경제관계가 더욱 긴밀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교역, 투자,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 장관은 우리 자동차 업계의 주요 애로사항인 자동차 수입 쿼터에 대해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으며, 까시네이 장관은 자동차 수입쿼터 개선이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금번 회담을 통해 양국 장관은 '한·에콰도르 SECA를 높은 수준으로 연내타결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으며, 오는 8월에 열릴 차기 협상에서 협상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상호 노력을 기울이기로 뜻을 같이했다.

### SECA 협상 및 플랜트 협력 방안 논의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에 앞서 지난 7월 5일, 에콰도르 산업전략조정부 라파엘 포베다(Rafael Poveda) 장관과 만나, 한·에

콰도르 SECA, 에콰도르 자동차 수입쿼터 및 태평양정유공장 건설 프로젝트 등 양국 간 통상현안 및 플랜트 협력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주형환 장관은 양국 간 교역규모는 2015년도 9억불 수준으로 크지 않으나,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고 있어 향후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전제하고, 먼저,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양국 간 경쟁력 있는 품목들이 추가될 경우 교역투자가 더욱 확대될 것이므로, 지난 4월 발생한 지진사태로 인해 지역 중인 SECA 협상을 가속화하여 연내타결을 위해 노력하자고 제안하고, 이에 대해 에콰도르 측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에콰도르가 2012년부터 도입한 자동차 수입쿼터제도로 인해 우리 자동차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하고, 수입쿼터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 포베다 장관은 자동차 수출이 한국의 주요 관심사항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이를 감안하여 수입쿼터 문제해결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에콰도르 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태평양 정유 공장 건설 프로젝트 관련, 우리 기업의 수주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양국 장관은 동 프로젝트가 원활한 금융 조달을 통해 한국·에콰도르·중국 3국 간 협력의 대표사례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 동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해 양국이 최대한 노력하기로 했다.

### ② 한·이스라엘 FTA 추진

## 한·이스라엘 FTA 협상 개시, 수출 및 협력 기대 분야는?

이스라엘은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크지 않지만 구매력이 높고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구매 성향을 보여 제품 경쟁력에 관세 인하까지 더해질 경우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개방뿐 아니라 IT, 서비스 산업, 기술 창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통해 다양한 경제 협력 방안이 마련될 경우 이스라엘의 혁신적 가치와 우리 제조 기술이 결합된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40개국과 7개의 FTA를 발효 중인 이스라엘은 미주, 유럽권 등에 집중된 무역구조를 완화하고 성장하는 아시아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과 FTA를 추진하고자 한다.

### FTA 추진에 따른 수출 확대 및 협력 기대 분야

이스라엘은 수출의 54.2%, 수입의 46.1%가 EU, 미국에 집중된 구조로 아시아권과의 FTA 추진을 계기로 무역 및 협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다. 2015년 한·이스라엘 무역은 20.5억 달러로 2011년 25억 달러를 기록한 이래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49위 무역상대국으로 절대적인 규모는 크지 않지만 올해 들어 42위로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 무선전화기, 합성수지 등의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반도체 제조용 장비, 항공기 부품 등의 비중이 높다. 또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관세가 낮은 수준이지만 자국 산업 기반이 있는 품목은 고가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어 FTA 추진에 따른 관세 혜택은 향후 우리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스라엘의 대 세계 수입액에 대한 가중평균 관세율은 2.8%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제조업은 1.9%, 농산물은 14.3%를 유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실용적 구매 성향으로 한국 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관세 철폐 시 우리의 주력 품목인 승용차 수출 확대 역시 기대되며 이스라엘 수입차 수요는 최근 증가세로,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이스라엘의 수요와 맞물려 현대, 기아차가 수입차 점유율 1, 2위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 및 부품 분야는 이스라엘이 전통적인 제조업에서 IT, 기술혁신에 기반한 서비스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되고 있어 전통적 제조업 분야인 기계 및 부품 등의 시장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 건설 및 주택의 경우 이스라엘 정부 주도의 인프라 및 주택 건설 프로젝트 시행에 따라 관련 수요가 확대되고 있어 우리 기업의 진출이 유망하다. 독창성과 창의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FTA 협상에서 다양한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이 좋으며, 서비스 산업에 경쟁력이 있는 이스라엘과 기술 협력을 통해 우리의 전통적 제조업에 혁신적 가치 도입이 기대된다.❷



우리나라는 2016년 6월 27일  
이스라엘과 FTA 협상을  
시작했다.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협상에서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 분과  
협상을 개시했다.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Global FTA News



[AFRICA]

### 아프리카 통상협정 현황



아프리카는 역내 교역 확대,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왔다. 대표적인 지역공동체는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ECOWAS(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EAC(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COMESA(동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등이 있다. 2015년에는 동부와 남부의 3개 지역공동체를 포괄하는 삼각자유무역지역(TFTA) 창설에 합의했다. 아프리카 역외와의 통상협정 중 주목할 것은 EU와의 경제동반자협정(EPA)과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이다. EPA는 EU가 기준의 일방적인 대아프리카 특혜조치를 상호호혜적인 무역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AGOA는 통상협정은 아니나 미국이 아프리카 국가 생산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무관세·무쿼터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 아프리카의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 개요

구분	인구	가입국 수	통합단계
TFTA (삼각자유무역지역)	620,000	26	자유무역지역 추진 중
SAD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233,944	15	일부 자유무역지역
ECOWAS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	251,646	15	관세동맹 및 단일통화 부분 진행 중
SACU (남아프리카관세동맹)	51,055	5	관세동맹
COMESA (동남아프리카경제공동체)	406,102	19	자유무역지역
EAC (동아프리카경제공동체)	124,858	5	공동시장

아프리카는 지역 수준의 경제통합은 진전이 있지만, 대륙 전체를 아우르는 자유무역협정은 지역별 이해관계가 상이해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프리카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은 당분간 경제블록 단위로 시장진입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역내국 간 실질적인 자유무역이 이뤄지고 있는 동부와 남부 아프리카는 지배적인 수입상이 역내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아프리카 제조업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기업은 역내시장 규모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동시에 아프리카 제조품에 대해 무관세·무쿼터 수입을 허용하고 있는 미국의 아프리카 성장과 기회법(AGOA)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EU 역시 아프리카 제조품 수입에 관대하고,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아프리카를 EU 수출을 위한 제조기지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❶



[BRAZIL]

### 브라질, 메르코수르 규정 변경 통해 '양자무역협정 체결' 추진

브라질 정부는 최근 타결이 어려운 다자무역협정 대신 양자무역협정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통상정책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라질 외교부는 메르코수르 규정에 묶여 독자적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는 방안으로 규정 변경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제정된 메르코수르 규정 'Decreto 32'는, 관세혜택 협정을 비롯한 모든 무역협정 체결 시 회원국 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 규정에 따라 브라질은 현재까지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등 단지 3개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그나마도 협정이 실제로 발효되는 것은 이스라엘과 체결한 FTA 1건뿐이다.

#### 타결 가능성 낮은 '다자협정' 대신 '양자협정'으로 전환 추진

현재 메르코수르 정회원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4개국인데 그동안 EU를 비롯한 다수의 국가와 FTA를 추진해 왔으나, 대부분의 협상이 회원국 간의 의견 차이로 대화가 진전되지 않고 장기간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 브라질과 매번 의견 차이를 보이는 국가는 아르헨티나로, 1999년부터 진행 중인 메르코수르·EU 간 FTA의 경우도 아르헨티나의 반대



가 이제까지 협상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다. 테메르 정부가 임명한 호세 세라(Jose Serra) 신임 외교장관은 자유무역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브라질은 메르코수르의 규정을 변경해서라도 양자무역협정을 체결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코수르 규정 변경을 위해서는 회원국 4개국 모두의 동의가 필요한데, 우루과이와 파라과이는 항상 양자무역협정 체결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브라질 정부에 별다른 반대 없이 동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우루과이의 경우 최근 중국과 FTA 체결을 적극 추진 중이며, 현행 메르코수르 규정에 따라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경우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한 파라과이의 반대를 우려하기 때문에 규정 변경에 적극 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아르헨티나는 브라질의 메르코수르 규정 변경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지만 우루과이와 파라과이가 적극 찬성할 경우 아르헨티나도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브라질과 양자 간 FTA 협정 체결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이미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들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브라질과 FTA 협상이 진행 중인 국가는 EU, 캐나다, 일본, 한국,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등으로 이 중 가장 대화가 많이 진행된 EU가 최우선 협상 대상국. 다음으로 캐나다, 일본, 한국 및 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과의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전망된다.❷

글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한·몽골 FTA 추진

## 유라시아의 관문, ‘몽골’을 통(通)하라!

몽골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 수도 울란바토르 정부청사에서 차히야 엘벡도르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몽골 EPA의 공동연구를 개시키로 합의했다. 그동안 몽골은 우리와의 FTA 논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해 왔다. 지난 6월에 발효된 일본과의 EPA로 무역역조에 대한 몽골 내 부정적 여론이 고조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한·몽골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의 설득이 효과를 발휘하면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하게 됐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대규모 광업개발 프로젝트, 인프라 건설 투자 등으로 2011~2013년 연평균 13.8%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나라도다. 매장량 세계 2위의 구리, 4위의 석탄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데다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의 배후시장을 확보한 전략적 요충지여서 성장 잠재력이 높다는 평가다. 몽골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한·미·일 등과 ‘제3의 이웃’ 정책으로 협력 강화를 추진 중이라는 점도 우리로서는 고무적이다. 몽골 최초의 FTA인 몽골·일본 EPA도 이런 맥락에서 체결된 것이다. 또 한국은 몽골의 4대 교역국 중 하나로 양국 간 교역규모는 1990년 수교 당시 271만 달러에서 2012년 4억9,000만 달러로 크게 늘었다. 다만 최근 몽골의 경제침체 영향으로 교역규모가 지난해 2억9,000만 달러로 줄어 경제교류 확대를 위한 활로모색이 필요한 시점에 FTA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대(對)몽골 수출 품목은 승용차, 화물차, 윤활유, 담배, 화장품, 건설중장비, 의약품 등이다. 한·몽골 FTA가 체결되면 관세장벽이 낮아져 이들 품목들을 중심으로 수출 확대가 기대되며 몽골이 보유한 천연자원의 수입 가격도 낮아질 전망이다. 기존에 몽골과 EPA를 체결한 일본에 대항해 우리 기업들의 상품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게 되는 점도 기대되는 효과다. 몽골 진출이나 투자를 원하는 한국 기업들에게도 한·몽골 FTA는 단비로 작용할 전망이다. 우리 기업들이 몽골 진출을 원하더라도 현지의 제도적 기반이 열악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게 사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우리나라와 몽골이 일종의 FTA인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추진키로 했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중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인 몽골의 빛장을 활짝 열어젖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공동연구 시작 시점을 기준으로는 6년, 협상개시 시점을 기준으로는 4년이 걸린 몽골·일본 EPA의 사례를 감안할 때 이보다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절차가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국은 2010년 5월부터 약 10개월 간 공동연구를 진행했다. 이를 기반으로 2012년 3월에 협상개시에 합의, 협상타결과 정식서명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6월 EPA를 발효했다.

### 몽골의 경제 동향 및 한국과의 무역 현황

몽골은 광물매장량 기준 세계 10위의 자원부국이며, 지정학적으로 동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유라시아의 교통과 물류 요충지로 잘 알려져 있다. 몽골은 1990년 시장경제 도입 이후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어갔으나, 최근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경제성장 둔화와 원자재 가격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5년 경제성장률은 6년 내 최저치인 2.4%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향후 오유 툴고이 (Oyu Tolgoi) 금·구리광산 개발이 본격화되면 장기적으로는 GDP의 1/3에 달하는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몽골의 수출은 47억 달러로 대부분 광산물 등 원자재에 집중되어 있으며, 수입은 38억 달러로 기계 및 부품, 건설자재, 식료 등 다양하다. 한·몽골 교역은 2015년 2억 9,2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몽골은 한국으로부터 주로 자동차 및 기호식품 등을 수입하고 구리 등 광물 자원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래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 우리나라 주도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양국 간 더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최근 몽골의 도시화율 증가에 따른 주택, 전력, 통신인프라 등 관련 산업의 진출이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류콘텐츠 확산으로 한류를 접목한 소비재와 서비스산업의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 몽골의 주요 수출입 대상국

국가	수출		순위	수입		단위 백만 달러, %
	2014(비중)	2015(비중)		국가	2014(비중)	
중국	5,073(87.8)	3,910(83.7)	1	중국	1,765(33.7)	1,390(36.6)
영국	399(6.9)	338(7.2)	2	러시아	1,549(29.6)	1,021(26.9)
스위스	28(0.5)	109(2.3)	3	일본	368(7.0)	275(7.2)
러시아	62(1.1)	77(1.6)	4	한국	353(6.7)	259(6.8)
한국	13(0.2)	67(1.4)	5	독일	159(3.0)	124(3.3)
이탈리아	51(0.9)	40(0.9)	6	미국	229(4.4)	116(3.1)
싱가포르	14(0.2)	27(0.6)	7	폴란드	52(1.0)	40(1.0)
일본	26(0.5)	20(0.4)	8	말레이시아	63(1.2)	39(1.0)
미국	15(0.3)	19(0.4)	9	우크라이나	70(1.3)	37(1.0)
UAE	20(0.4)	15(0.3)	10	태국	45(0.9)	34(0.9)
총계	5,073	3,910		총계	5,237	3,797

###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경제 협력 강화 필요

몽골은 유럽과 동아시아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러시아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 등 주요 국가들도 몽골의 지리적 이점을 높이 평가해 앞다투어 경제 협력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의 역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몽골과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한국·몽골 FTA 추진도 불가피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몽골 FTA는 2008년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 이후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 일본과 몽골은 3년간의 협상 끝에 일·몽골 FTA(몽골의 최초 FTA)를 올해 6월 7일에 발효했다.

몽골의 도시화율은 2010년 67.6%에서 2015년 72.0%까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 도시화율은 75.6%에 달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주택, 전력, 통신인프라 등의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몽골의 미비한 철도 및 도로 등 수송 인프라가 광업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자원개발에 필요한 교통 인프라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한류문화콘텐츠 확산을 계기로 소비재 수출 및 서비스 산업 진출 역시 확대 가능하다. 몽골의 구매력기준(PPP) 1인당 GDP는 약 1만2천 달러로 주요 동남아 국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의 소비재 수출이 가능하다. 또 몽골에서 한류 드라마의 인기와 함께 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관련 서비스 산업의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❷

카툰 안종만

## 중남미 3대 시장, 콜롬비아가 열린다!



## 한·콜롬비아 FTA 발효

콜롬비아 현지 분위기와 시장 분석  
한·콜롬비아 FTA 발효의 의미와 시사점

글 박정준(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통상전략센터 연구원)

사진 한국경제신문

콜롬비아는 이번 한·콜롬비아 FTA를 계기로 한국에게 약 426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조달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남미시장을 밝히는 또 하나의 촛불 한·콜롬비아 FTA

## 콜롬비아를 이해한다는 것

2016년 7월 15일 0시를 기하여 한국과 콜롬비아의 FTA가 정식 발효되었다.

콜롬비아에겐 최초의 아시아 국가 FTA 파트너다. 2009년 협상이 개시되어 12년 타결, 13년 정식서명, 14년 국회 비준까지 나름 일사천리로 주요 절차들이 완료되었지만 콜롬비아 국내 정세 등으로 7년 만에 정식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많은 기다림과 우여곡절 끝에 발효된 FTA인 만큼 칠레, 페루에 이어 남미시장 진출을 위한 세 번째 교두보 역할을 해줄 콜롬비아 시장을 꼼꼼히 해석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콜롬비아는 낯선 국가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등 다른 중남미 국가만큼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 또한 아닌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콜롬비아가 세계적인 가수 샤키라(Shakira)의 나라이며,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돋기 위해 파병한 16개국 중 유일한 남미국가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15일 한·콜롬비아 FTA의 정식발효와 동시에 대(對)콜롬비아 수출품목 약

7,000여 개의 관세가 완전 철폐되거나 인하되고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장도 개방된다. WTO 정부조달 미가입국인 콜롬비아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은 특별한 기회다.

### 적도(赤道)를 관통하다, 콜롬비아라는 나라

남미대륙 북서쪽 끝에 위치한 콜롬비아가 최초로 발견된 것은 1499년 스페인 탐험대에 의해서였다. 이어 그들로부

터 식민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 노동력이 유입되며 점차 지금의 다인종, 다문화사회의 모습을 갖추다가 1810년 마침내 독립, 오늘날의 콜롬비아가 건국되었다. 정식 명칭은 콜롬비아 공화국(República de Colombia). 면적은 114만km<sup>2</sup>로 무려 한국의 12배에 가깝지만 인구는 2015년 기준 약 4,670만 정도로 우리보다 적다. 수도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보고타다. 과거 스페인의 식민지배를 당한 연유로 스페인어를 국가공용어로 사용하며, 대통령제(임기 4년, 1회까지 연임가능)정부에 양원제 의회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후안 마누엘 산토스 칼데론 대통령이 2010년 8월 취임, 연임에 성공하여 2014년 8월부터 현재까지 2기 정부를 운영하고 있다. 한때 내전과 게릴라, 마약 카르텔 등의 이유로 정치 사회 치안이 매우 불안정했으나 2000년대 들어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다. 우리나라와는 1962년 수교했다.

###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콜롬비아 경제

2000년대 초 일바로 우리비 대통령 당선 후 정세와 치안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하며, 같은 시기 콜롬비아의 경제도 팔목할만한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무려 연평균 5.4%에 달하는 GDP 성장률을 보인 콜롬비아는 비록 2008년 미국과 유럽에서 촉진된 글로벌 금융위기로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2010년부터 다시금 성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2016년 IMF에 따른 명목상 GDP는 3,777억 달러로 세계 40위, 아일랜드나 칠레, 핀란드와 비슷한 수준이고, 1인 기준으로는 7,720달러를 기록, 세계 91위를 기록했다. 이와 더불어 긍정적인 부분은 콜롬비아 경제가 다시금 상승세를 타기 시작한 2010년쯤부터 물가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이다. 평균 약 2%대의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최근 10년간 최소치로 콜롬비아의 경제가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 콜롬비아에서 나오고, 콜롬비아로 들어가고

2014년 기준 콜롬비아는 수출 548억 달러, 수입 640억 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한국이 수출과 수입 각각 5,731억 달러, 5,256억 달러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이지만 과거에는 수출과 내수 소비를 바탕으로 경제성장을 이끌어 왔던 국가임을 고려하면 향후 한·콜롬비아 FTA의 효

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수출입무역동향과 내수시장분석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특히 콜롬비아는 지정학적으로도 대서양과 태평양에 모두 걸쳐있어 북미와 남미 사이에 교두보로써 역할, 우리의 이전, 이후 FTA 전략 수립에 많은 힌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콜롬비아의 주요 수출품은 우리에게 무척 친숙한 커피다. 그러나 그 외에도 원유와 석탄, 금과 같은 에너지 광물 수출에 강세를 보인다. 실제 중남미 4위 석유 생산국 콜롬비아는 자원부국으로서, 니켈이나 천연가스, 석탄(매장량 중남미 1위)과 같은 기타 에너지 자원 역시 풍부하다. 최근 의사를 밝힌 한·몽골 FTA가 성공적으로 협상을 마치고 발효될 시, 향후 한국의 에너지 네트워크에 큰 힘을 더해줄 전망이다. 수입은 소비재 위주로 한다. 승용차나 컴퓨터, 휴대전화 등의 비율이 높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과 콜롬비아의 양자 교역에서도 드러나는데 2015년 기준 한국은 콜롬비아에 자동차 및 관련 부품, 타이어, 합성수지, 무기류, 선박 등을 주로 수출했고, 콜롬비아는 커피, 원유, 합금철, 고철, 동 및 알루미늄 제품 등을 우리에게 수출한 바 있다.

양국 간 FTA 발효로 이러한 교류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보수적인 내수시장에 대한 대비는 철저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품질이 안 좋아도 원래 써본 물건이 안 써본 좋은 물건 보다는 낫다(Mejor malo y conocido que bueno por conocer)”라는 옛 남미속담이 콜롬비아 내수 시장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새로운 제품에 대하여 관심을 표명하는 것까진 어렵지 않으나 이것이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수많은 난관이 특히 콜롬비아에선 존재한다. 한 문장가는 3B(BUENO=좋은, BONITO=예쁜, BARATO=값이 저렴한)전략을 기억할 것을 추천하기도 한다.

### 그 외 한·콜롬비아 FTA의 추가적 시사점

WTO 정부조달협정 미가입국인 콜롬비아는 이번 한·콜롬비아 FTA를 계기로 한국에게 약 426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조달시장의 문을 활짝 열었다. 경제성장이라는 화려함의 이면에 국민들을 위한 교통, 보건,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인프라가 턱없이 쥐약했던 콜롬비아는 이번 FTA를 통해 도로와 항공,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시작으로 한 활발한 조달협력에서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양국은 모두 TPP에 공식적인 참여의사를 밝힌 바, 향후 추가 가입 과정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될 수 있을 전망이다.❷

글 장명수(주콜롬비아 한국 대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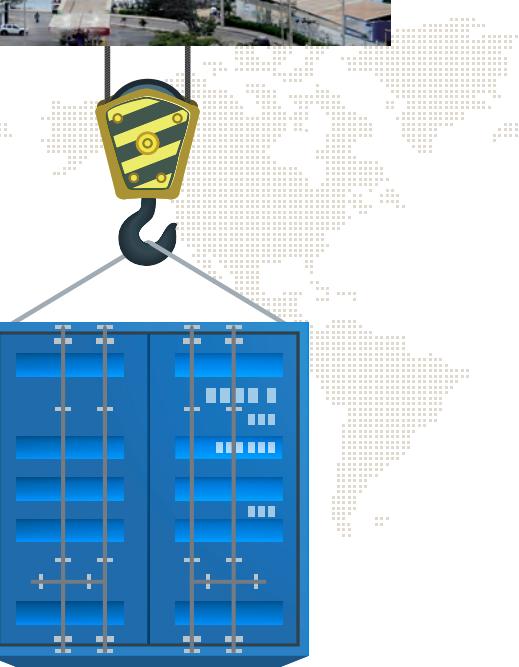
그간 FTA 활용이 부진했던 콜롬비아는 한·콜롬비아 FTA를 통해 수출의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한·콜롬비아 FTA 발효 이후 콜롬비아 현지 분위기

## 콜롬비아, 아시아 시장 통한 수출 다변화의 필요성 절감

우리나라의 15번째 자유무역협정인 한·콜롬비아 FTA는 국내뿐 아니라 콜롬비아 내에서도 아시아와 체결하는 최초의 FTA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중남미 4대 경제대국으로 손꼽히는 콜롬비아와의 FTA가 떠오르는 글로벌 시장인 중남미 대륙의 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찬반 논쟁이 치열했던 콜롬비아의 반응은 어떨까? 지난 FTA 활용의 실패를 만회하고, 본격적인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해 다양한 액션플랜을 준비 중이다.



2008년 11월 한국과 콜롬비아 양국 정상들이 FTA 사전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한 후 거의 8년이 지난 금년 7월 15일 마침내 한·콜롬비아 FTA(이하 한·콜 FTA)가 발효되었다. 2013년 2월 협정문 서명 후 우리나라 2014년 4월 국회 비준 동의를 완료하여 모든 국내 절차를 마쳤으나 콜롬비아는 2016년 4월이 되어서야 국내 절차를 완료하였다. 이처럼 두 나라가 국내 절차를 완료하기 까지 1년 이상의 시간 차이가 발생한 것은 기본적으로 국회 비준 절차 이후 헌법재판소의 헌법 합치성 심사를 요구하는 콜롬비아의 국내 절차적 특성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한·콜 FTA의 경우 콜롬비아 내 격렬한 찬반 논쟁으로 인해 기간이 더 소요되기도 하였다.

### 적극적인 FTA 활용법 모색

이러한 상황에서 한·콜 FTA에 대한 콜롬비아 언론 보도는 발효 전까지는 찬반 양쪽 진영의 입장을 전달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FTA가 발효된 현재에는 콜롬비아 사회가 향후 어떻게 동 FTA를 적극 활용하여 국가 발전에 기여토록 할 것인가로 이동하고 있다. 그간 콜롬비아 농업계는 한·콜 FTA를 현지 농업 부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초의 FTA로 평가해 왔는데, 현지 언론들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정부 기관의 자료 및 관계자들의 발언을 토대로對한국 수출 유망품목에 대한 분석 등 동 FTA 발효에 따른 기대 효과 및 향후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이외에도 현지 언론들은 한·콜 FTA는 콜롬비아가 아시아 국가와 최초로 체결한 FTA라는 사실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콜롬비아는 개방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국가지만, 최근에는 산업계 및 언론을 중심으로 콜롬비아·미국 FTA, 콜롬비아·EU FTA 등이 발효 이후 실제 수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이는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는 비판적 인식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인식은 향후 새로운 FTA를 추진하기보다는 기존에 체결한 FTA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져 한·콜 FTA 진전을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가 되기도 하였다.

###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한 다양한 '액션플랜' 수립 중

그러나 2014년 하반기부터 지속되고 있는 석유, 석탄 등 원자재 가격 하락세는 콜롬비아의 무역 수지 적자를 초래하여, 현재 콜롬비아의 수출 포트폴리오에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한 수출 품목 및 수출대상지 다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전반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한·콜 FTA는 이러한 맥락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대변하듯 콜롬비아 상공관광부는 한·콜 FTA를 대아시아 시장 진출의 기반으로 만들기 위해 한국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구체적이면서도 다양한 '액션 플랜 (Action Plan)'을 수립하였다. 먼저, 콜롬비아 수출관광투자진흥청(Procolombia)은 7월 25일 한·콜 FTA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7월 26~28일 개최되는 콜롬비아 내 최대 패션쇼 'Colombiamoda'에 한국의 수영복 및 속옷 구매업체들을, 오는 10월 12~13일 개최되는 '콜롬비아 비즈니스 라운드 3.0'에는 한국 IT 기업들을 초청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출관광투자진흥청은 11월 개최되는 '서울 카페쇼'에 콜롬비아 커피 회사들이 참여하도록 준비 중이다. 콜롬비아로부터 상품 수입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한·콜 FTA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중인 콜롬비아 수출관광투자진흥청을 활용하면 현지 수입업자 물색 및 접촉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콜롬비아 시장 진출을 준비 중인 우리 기업들은 한·콜 FTA 발효와 함께 한국에 대한 콜롬비아의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콜롬비아 사회는 한·콜 FTA의 발효가 양국 간 교역 증대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제공해 줄 것이 분명하지만 이를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사실 또한 그간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기업들도 콜롬비아 현지의 이 같은 적극적인 태도에 호응하여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시장 조사 등 면밀한 진출 준비를 통해 한·콜 FTA 발효가 양국 간 호혜적인 경제통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❷

글 하상섭(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연구교수)  
사진 한국경제신문

### 한·콜롬비아 FTA 발효의 의미와 시사점

## 콜롬비아는 TPP 진출을 위한 동반자이자 지렛대

2016년 말 기준 4,900만 명(연간 약 50만 명 인구 증가 추세)으로 중남미 국가들 중에 인구 규모 3위(인구 2억 이상인 브라질, 1억 이상인 멕시코에 이어 3번째 규모)이자 동시에 중남미 3대 시장의 하나인 콜롬비아와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발효시켰다. 한·칠레(2004년), 한·페루(2011년) FTA 협정과 함께 중남미 국가 중에 3번째 발효국가이다. 특히 전문가들은 동북아에서 이웃 국가들인 중국 및 일본 등에 앞서 우리와 FTA를 체결함으로써 콜롬비아 시장에 대한 한국 상품들의 선점 효과도 클 것이라고 비교·분석하고 있다.

양국은 이미 2012년 6월 정부 간 FTA를 체결했지만 실질 발효는 다소 지연되었다. 오랜 시간을 거쳐 콜롬비아의 국제조약 비준 시 요구되는 국내 절차인 행정부-입법부-사법부(헌법재판소) 삼권 분립 등의 시스템이 순차적으로 마무리되면서, 2016년 7월 15일 드디어 공식화되었다. 그간 한·콜롬비아 FTA 발효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건 콜롬비아 국내 제조업계(자동차업계)의 산업 경쟁력 저하라는 콜롬비아 산업계 이해 당사자들의 저항 논리였다. 하지만 콜롬비아는 지난 2012년 미주 대륙 경쟁 국가인 칠레·페루·멕시코와 태평양동맹을 결성했고, 미국과도 FTA를 체결해 명분이 다소 약화되었다. 한국 제조업 상품들과의 경쟁력 약화 우려가 시장 변화로 인해 감소된 것이다.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 협정문에는 양국 간 상품, 원산지, 통관,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무역규제, 투자, 서비스, 일시입국,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 조달, 지식재산권, 협력 등 22개 분야를 망라하는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나라 96.1%, 콜롬비아 96.7%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몇몇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대한 점진적 관세 철폐는 양국의 이해관계를 만족시키며 협상 갈등에서 벗어났다.

**향후 중남미 진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의 역할 기대**  
특히 콜롬비아의 후안 마누엘 산토스(Juan Manuel Santos; 2010년~2014년 1기 집권 이후 2014년 재임에 성공해 2018년까지 집권) 정부는 '국가개발계획(Plan

Nacional de Desarrollo: PND)'을 강력한 의지로 진행해오고 있다. 이들은 대내적으로 콜롬비아 내 반군과 평화협정을 통해 국가 이미지를 개선하고, 대외적으로는 중남미 지역 국가와의 경쟁적 협력 관계 심화 및 태평양 유역으로 대외무역 관계의 지평을 확대하는 것을 중점으로 경제 발전을 위한 국제관계 다양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sup>1</sup> 이에 콜롬비아 입장에서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일종의 시험대이자 태평양 유역으로의 대외경제 확대의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경제학자 출신인 산토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발전 전략 가운데 혁신과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농업을 비롯한 다양한 기술 발전이나 산업 부문에서 한국이 매우 이상적인 경제협력 국가로 등장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콜롬비아가 태평양과 대서양(カリブ 해)이라는 두 개의 해양을 연결하고 있어 남미와 중미 그리고 카리브 지역 전체로 비즈니스를 확대하기 위한 '콜롬비아 플랫폼(platform)' 활용 전략이 부상하고 있다. 콜롬비아는 현재 9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했고 이외에도 다른 4개국과 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향후 중남미 진출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의 역할이 기대된다.

외교사적 맥락에서 보면 중남미 국가 중 유일하게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돋기 위해 군사적 원조를 포함해 참전한 경험이 있는 혈맹 국가라는 특징과 더불어, 석탄 및 석유 자원이 풍부하다. 석탄은 원유에 이어 제2의 수출 품목이며 석탄 매장량 및 생산량이 모두 중남미 1위로 향후 한국과 에너지 및 자원외교 차원에서도

협력이 요구된다. 특히 근래에는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한 발전, 수도인 보고타의 대기오염 저감 등에서 우리나라와 많은 협력을 강화해 오고 있으며 생물다양성 관련 생물자원 개발 가능성이 가장 큰 국가로 우리나라의 기업과 정부가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그 밖의 양자 간 FTA를 활용한 미래 지원외교 및 신(新)성장 동력 산업인 새로운 생물자원 개발투자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후변화 공동대응 등에 대한 국제협력이 진전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 콜롬비아 무역 다변화 추구에 큰 역할

사실 양국 간 FTA에 대한 경제적 기대효과는 콜롬비아에 더 큼 수 있다. 예를 들어, 구조적 차원에서 봤을 때 그동안 수출입 문제에서 무역다각화에 상당히 협소한 성격을 가진 콜롬비아의 경우 우리나라와의 무역 개방과 자유무역 강화를 통해 현재까지 주요 수출 대상국인 미국, 유럽연합(EU), 베네수엘라에 이어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할 수 있다. 또 주요 수입 대상국이던 미국, 유럽연합(EU) 그리고 중국뿐 아니라 다양한 한국산 제품을 수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이다. 발효 시점부터 우리나라 4,390개 품목에 대한 현지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2,797개 품목 관세가 인하됨과 동시에, 양국의 수출입 관계는 질적·양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무역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콜롬비아 미래 대외무역 전략에 상당히 부합할 수 있다.<sup>2</sup> 동시에 한국을 거점으로 한 동북아 시장 진출에 대한 교두보를 장악할 수 있는 기회가 생성될 수 있다. 따라서 한·콜롬비아 FTA는 콜롬비아의 태평양 인근 국가들, 특히 동북아 시장 진출을 위한 시험대 역할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 수출 유망 품목인 우리나라의 화장품·미용용품(관세율 15%)은 7~10년 이내에 그리고 의료기기(관세율 5%) 및 알로에·홍삼 등 기타 비알을 음료(관세율 15%)는 발효 즉시 관세가 사라진다. 하지만 제조업 품목으로서 주요 수출 품목인 승용차(관세율 35%)는 10년 이내, 자동차 부품(관세율 5~15%)과 승용차용 타이어(관세율 15%)는 5년 내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서 이 분야에 대한 효과는 다소 자연될 수 있다.



콜롬비아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진출을 위한 '한국-플랫폼' 전략의 십분 활용인 셈이다.

### TPP 가입 확대 가능성 높여

하지만 무엇보다도 양국이 발효시킨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Bilateral FTA)의 가장 큰 의의는 우리나라와 콜롬비아 정부가 공동으로 추구하고 있는 '다자' 간 자유무역 협정(Multilateral 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로의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다 데 있다. 태평양동맹(PA) 회원국으로서 중남미 태평양 유역의 경제공동체 구축을 가속화하고 있는 콜롬비아는 미래 한국의 TPP 가입을 위한 중요한 '지렛대' 국가가 될 수 있다. 특히 TPP 가입을 위해 사전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존 회원국들의 동의 구축에서 이미 양자 간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칠레, 페루와 더불어, 콜롬비아라는 새로운 우군을 확보함으로써 이후 가입을 위한 협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양자 관계에서 다자 관계로의 경제공동체 진입에 대한 협상 참여와 동의에 대한 조건들은 개별 국가별로 각자 다를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시기를 비롯해 다양한 정치외교 및 대외무역 관계에서 단계적으로 상호 윈-윈(win-win) 관계로 발전해 오고 있다는 점과 이미 협상을 진행 중인 한·멕시코 자유무역협정까지 포함해 고려해 보면, 이들 태평양동맹(PA) 국가들과의 자유무역 강화 및 경제협력 증대는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TPP 가입으로의 기회를 더욱 확대시켜 갈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 발효는 환태평양경제공동체 진출을 위한 동반자이자 지렛대이며 동시에 상호 플랫폼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평가된다.❷



1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conomist)는 일찌감치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리드할 신중국들로 CIVETS(콜롬비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이집트, 터키, 남아공)를 지목한 바 있다.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브렉시트가 한·EU FTA에 미치는 영향과 한·영 FTA 추진 시나리오

## EU 탈퇴 전까지는 한·EU FTA 적용, 탈퇴 시점부터는 MFN 적용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됨에 따라 전 세계 경제는 물론 한·EU FTA의 향후 영향 및 한·영 FTA 추진 가능성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EU FTA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브렉시트 결정으로 앞으로 EU 및 영국에 대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크다. 영국의 EU 탈퇴 완료 전까지 협상을 모니터링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한 때이다.

지난 6월 23일 실시된 영국 국민투표에서 찬성 51.9%로 영국의 EU 탈퇴가 결정되었다. 주요 금융기관들은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비해 세계 경제성장률을 당초 전망에서 0.1~0.3%p 하향 조정하였으며, 영국 경제는 EU에 진류했을 때에 비해 중장기적으로 7.7%까지 후퇴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경기둔화가 우려된다. 향후 영국은 유럽의회에 탈퇴를 통보한 후 2년 동안 EU 회원국들과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관련해 한국무역협회 정혜선 연구원과 제현정 연구위원이 한·EU FTA와 브렉시트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한·EU FTA의 현재 점수

발효 5주년을 맞은 한·EU FTA 성과를 살펴보면 하반기부터 FTA 수혜품목을 중심으로 EU에 대한 수출이 증가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FTA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외부적 요인이 겹쳐 발효 직후 무역수지 적자가 오히려 확대되어 FTA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최근 EU 경기회복에 힘입어 FTA에 의해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품목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발효 5년차에 자동차 및 부품, 축전지 등 FTA로 관세가 철폐·인하된 수혜품목 수출은 12.5% 증가하였으며 한국의 EU 수입시장 점유율도 발효 전 2.25%에서 2.43%로 상승하였다. 브렉시트 진원지인 영국에 대한 FTA 수혜품목 수출은 발효 5년차에 20.6% 증가했으며 수출 활용률이 80%를 상회하여 기업의 활용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브렉시트 이후 한국의 대EU 수출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에 따른 EU내 소비 위축과 파운드·유로화 약세의 영향으로 우리의 대EU 수출이 둔화 또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존 재정위기 시와 유사하게 향후 1~2년간 EU의 역외 수입 비중 역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12년에는 그리스 등의 교역 급감으로 EU역내수입이 일시적으로 하락했으나, 2013~2014년에는 역내 수입비중이 상승하였으며 재정위기에서 벗어난 2015년에 역내 수입비중이 다시 하락했다. 가공단계별로는 중간재와 소비재의 역외수입이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2~2014년 중 소비재와 중간재의 역내수입 증가율이 역외수입 증가율을 상회했으나 2015년에는 역외수입이 역내수입을 상회한국의 경우 반도체, 철강, 금속 등의 중간재의 수출 둔화 가능성성이 있으며, 소비재의 경우에는 자동차, 영상기기, 섬유제품, 도자기 등에서 수출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중간재의 경우 대EU 수출 6~7위 품목에 해당하는 철강판(6위), 반도체(7위)를 비롯하여 원동기펌프(11위), 정밀화학원료(21위)의 현지 수입수요 감소로 한국의 대EU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재는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를 비롯하여 영상기기(22위), 전자응용기기(25위), 섬유제품(63위)의 수출둔화 가능성이 있다. 다만, 자동차 등의 경우 엔화강세의 영향으로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출둔화 영향이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한·영 FTA 추진 가능 시기

보고서는 FTA 상대국들과 재협상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와 내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영국이 EU로부터 완전히 탈퇴하기 전까지는 EU법에 구속되기 때문에 탈퇴 통보 후 EU와의 협상을 거쳐 또는 자동으로 탈퇴되기 이전까지 새로운 무역협상을 개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한편, 한·EU FTA를 비롯해서 영국이 EU 차원에서 체결했던 FTA는 영국·EU 간 탈퇴 협상이 시작되어야 상대국과의 재협상 시기와 방법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한다. 영국의 EU 탈퇴가 완료된 이후에야 한·영 FTA 추진이 가능한 경우, 그 이전까지 영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한·EU FTA 특혜관세를 부여한다. EU의 승인 하에 또는 자동으로 영국이 EU에서 탈퇴하는 시점부터 영국은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새롭게 제정되는 자국의 MFN 실행관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영국은 브렉시트로 인한 무역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새로운 MFN 실행관세율을 제정시 EU의 기존 MFN 실행관세율을 그대로 준용할 가능성이 크다.

### 한·영 FTA 추진 시나리오

이번 보고서는 영국의 EU 탈퇴 이후 추진될 한·영 FTA의 결과에 따라 우리의 대영국 수출에 대한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하며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했다.

**시나리오 ①** 한·영 FTA가 발효 5주년이 지난 한·EU FTA 내용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영국은 모든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무세를 적용하게 됨.

**시나리오 ②** 영국이 한·EU FTA와 차별적인 한·영 FTA를 원할 경우 기존에 EU 차원에서 무세 혜택을 받았던 품목에 대해 새로운 양허스케줄에 따라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영국이 EU 차원의 FTA 체결 상대국(총 53개 경제권)과 새로운 내용으로 협상을 진행하게 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될 뿐 아니라 영국 스스로에게 이득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

**시나리오 ③** 한·영 FTA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영국의 MFN 실행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이 커짐. 특히, 지금까지 영국 시장에서 한·EU FTA를 통해 일본, 중국, 대만 등에 비해 관세 상 유리했으나, EU 탈퇴 이후 MFN 실행세율을 부과할 경우 동등한 입장에서 경쟁해야 함.

### 한·영 FTA 추진 시나리오별 결과



### 한·영 FTA 협상 장기화 시 영향

한·영 FTA 협상이 장기화될 경우, 영국의 대한국 수입 중 약 54%에 대해 한·EU FTA 특혜(무세)가 사라지고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이 EU 수준의 MFN 실행세율을 부과하게 된다면 자동차 및 부품, 항공기 부품, 플라스틱 제품 및 합성수지, 고무제품 등의 관세부담이 클 것이다. 또 대영국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에 대해 10% 관세가 적용 될 경우 수출기업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특히, 영국이 EU와의 단일시장을 유지하면서 탈퇴가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영 FTA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EU 자동차에 비해 매우 불리해질 것이다. 보고서는 결론으로 브렉시트가 한·영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의 EU 탈퇴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한·EU FTA를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으로 한·영 FTA를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

정리 김선녀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한·중 FTA 발효 6개월이 가져온 변화와 이슈

## 중소기업 활용도 제고 및 원산지 증명서 발급 확대 위한 제반 마련 필요

한·중 FTA가 발효된 지 반년이 지났다.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 중 하나인 중국과의 FTA는 국내의 많은 수출 기업의 관심 속에 발효되어 2년차에 접어들었다. 최근 KOTRA는 한·중 FTA 발효 6개월 동안의 주요 이슈와 변화 그리고 기업들의 한·중 FTA 활용률에 대해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 한·중 FTA 발효 이후 주요 이슈

#### ① 기업 활용률 제고

한·인도 CEPA, 한·아세안 FTA 등 일반적으로 개도국과 체결한 FTA일수록 관세양하 활용률이 낮은 편이다. 이는 비효율적인 관세행정, 낮은 자유화율, 원산지 규정 활용 확대를 위한 제반 부족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한·중 FTA의 경우 역시 2년 차부터 활용률이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원산지증명 간소화, 한·중 간 원산지 자료 교환 시스템 마련, 사전품목심사제도 확대 등 기업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일련의 작업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특히 한·중 FTA로 중국 고관세 소비재 중 일부 품목의 관세 철폐 및 인하를 적극 활용해 수출 확대 효과로 이어질 수 있게 해야 한다.

#### 한국이 체결한 FTA별 활용률 추정

	수출(추정)			수입(추정)			단위 %
	2011	2012	2013	2011	2012	2013	
ASEAN	33.1	37.7	38.7	73.8	73.8	75.6	
EFTA	_	79.8	80	55.7	61.9	41.4	
EU	65.7	81.4	80.8	47.1	66.8	67.8	
미국	_	68.9	76.1	_	61	67.3	
인도	35.8	36.2	42.9	53.6	52.7	61	
칠레	_	75.2	78.8	95.8	97.9	98.5	
페루	61.3	78	91.8	52.6	92	97.9	

#### ② 중소기업 수출 확대

한·중 FTA는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은 소비재 분야 시장의 관세 철폐, 관련 기술장벽(시험인증 등) 등의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을 맞추어 협상이 진행됐던 '중소기업형 FTA'이다. 그동안 체결된 FTA는 발효 후에도 기업유형(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중 중소기업의 수출기업 비중이 제일 낮은 점을 해소하지 못했다. 한·중 FTA를 통해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필요하다.

#### ③ 서비스 및 투자 후속 협상이 관건

2016년 3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통상장관회담에서 연내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네거티브 협상 방식(금지, 제한으로 분류된 분야 외 나머지 분야는 별도 언급 없이 모두 개방)의 이 분야 협상에서 얼마나 실효성을 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인지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 한·중 FTA가 가져온 변화

#### ① 특혜관세 활용

중국 해관총서에서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12월 발효 후 1개월간 중국 전역에서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받아 한국으로 수출한 화물가지 총액은 12억1200만 달러이며, 원산지 증명서 기준으로는 총 3만4900건으로 집계되었다.

#### 한·중 FTA 모니터링 결과

지역	내용
베이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효 초기 대비, 원산지증명 애로사례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에 따라 2년차도 인하 관세율 적용</li> </ul> </li> <li>베이징, 텐진 지역 서류 완비 시 48시간 통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 검역시간 포함 시 포함 시 통상 24시간 이상 추가 지연됨</li> </ul> </li> <li>중국 물류업계 실무자의 한·중 FTA 정책 인지도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물류협회 회원사 교육 및 문서공람 등 효과</li> </ul> </li> </ul>
상하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중 FTA 수출입화물관리청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협정에 따라 2차년도 인하 관세율 적용</li> <li>- 통관 속도 준수한 편. 단 발효 전 대비 관련 서류 검토 강화</li> </ul> </li> </ul>
광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TA 통관 조항에 '직접운송'이 추가되어 최혜국 협정 하 제 3자를 통해 들어오는 화물의 경우 제출 서류가 간소화 됨</li> </ul>
항저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정 내용에 따라 관세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31 기준 한·중 FTA 원산지 증명 발급 수 총 1,285건</li> </ul> </li> <li>저장성은 국제 전자상거래(보세구 수입) 비중이 높아 저장성 소재 수입 기업들이 받는 FTA 영향 적은 편</li> </ul>
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관 효율화의 경우 기종에 비해 업무 편의성 개선</li> </ul>

자료 KOTRA 중국지역 무역관 조사(2015. 12. 20~2016. 3.)

#### ② 소비재 위주 대중 수출의 점진적 증가

CEIC 통계를 활용해 한·중 FTA 발효 후 수출이 증가한 품목을 살펴보면 가공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목욕용품, 가전, 가방 등 소비재에서 예년 대비 수출액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③ 통관환경 변화

먼저 일반화물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등 구비서류 정확 시 대체적으로 48시간 이내 통관이 가능했다. 단 위생허가, 별도검역 등이 필요한 품목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원산지 증명서 미비 시, 세금 담보금을 지불 후 선적일 기준 1년 이내 추가 보완신고가 가능하다(단, 한국과 달리 중국은 '사후 보완신고 의사'를 사전에 반드시 밝혀야 함). 비관세 장벽 완화 체감도 역시 낮은 편이다. 검역, 라벨링 기준에 큰 변화가 없으며, 국가 표준이 없는 제품일 경우 일괄적인 통관 어려움은 있다. 지방 해관별 한·중 FTA 협정 세부내용 이해도 차이가 존재하며, 현지 통관대행사 역시 유사한 상황이다.

### 한·중 FTA 업종별 효과 및 체크 포인트

소비재(내구, 반내구, 비내구)와 화학업종은 관세철폐 효과가 두드러진 편이며,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농식품, 소비재 분야는 업종 특성상 비관세장벽(기술규정, 시험인증, 위생허가, 통관 등) 완화 효과가 큰 편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국제분업 효과(FTA 네트워크를 활용한 벌류체인 활성화)가 있는 업종으로는 전자, 섬유, 농식품, 소비재 업종이 있다.

#### 11개 업종 한·중 FTA 효과 비교

업종	수출비중	수입비중	무역수지	FTA 효과			
				관세철폐	NTB*완화	VC**활성화	종합
전기전자	전기	44.5	31.3	365.1	△	○	○
	전자	2.4	5.9	-3.3	△	○	○
자동차	승용차	1.2	0	17.4	-	-	-
	부품	4.4	1.4	52	△	△	○
섬유의류	섬유	1.4	2.5	-1.5	△	△	○
	의류	0.3	3.9	-31.2	○	△	○
석유제품	4.2	0.3	58.6	△	-	-	△
석유화학	15.4	2.4	201.5	△	-	△	△
철강	3.3	13.5	-73.9	△	△	△	△
비철금속	1.6	1.8	6.3	△	△	△	△
기계	9.6	11.4	36.3	○	△	△	○
화학	3.4	5.7	-2.6	○	○	○	○
플라스틱 / 고무 / 가죽	2.4	2.9	8.6	△	△	△	△
농식품	0.6	2.5	-14	△	○	○	○
소비재	내구	0.7	2	-8.5	○	○	○
	반내구	0.8	8.6	-66	○	○	○
	비내구	1.3	1.6	3.8	○	○	△

○ 효과 큼  
△ 다소 효과 있음  
- 효과 없음 혹은 관계 없음  
\* 비관세장벽  
\*\* 벌류체인

자료 KOTRA 중국사업단

### FTA 활용 많아질수록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

한·중 FTA의 원산지 증명서 발급은 기관발급 방식으로, 인증 수출자가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존에 자체 원산지 증명서 발급 자격을 갖춘 기업들도 기관 발급과정을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관세청과 대한상의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신청 및 발급 시스템을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산지 증명서 등의 자료를 직접 제출하는 것이 아닌 전자시스템을 통해 상대국 세관에 전달하는 원산지 전자자료 교환시스템 등 기업들의 한·중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에 느끼는 부담을 줄이고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반이 확대되는 만큼, FTA 활용도는 비례해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자체 원산지 관리업무 인력 부재, 정보력 미흡 등으로 FTA 활용을 통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물리적 여건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은 더더욱 미흡한 것으로 파악된다. FTA 활용률이 높아질수록 원산지 사후검증 요청이 늘어날 수 있어 원산지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 외에도 기업이 적극적으로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등 사전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전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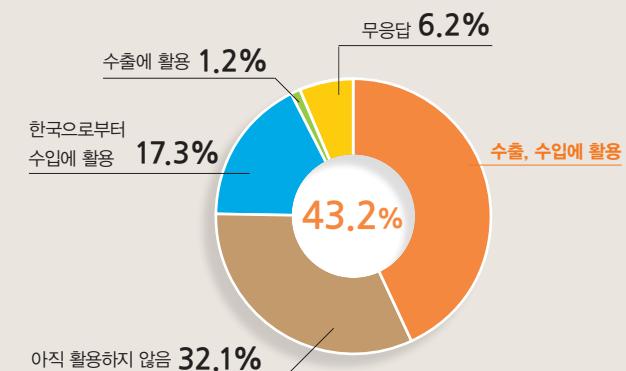
### 현지 진출기업의 한·중 FTA 활용에 관한 의견



KOTRA 상하이 무역관에서는 지난 5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현지 진출기업 중 80개사를 대상으로 한·중 FTA 활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활용 여부,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비관세장벽 완화 여부,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이 수렴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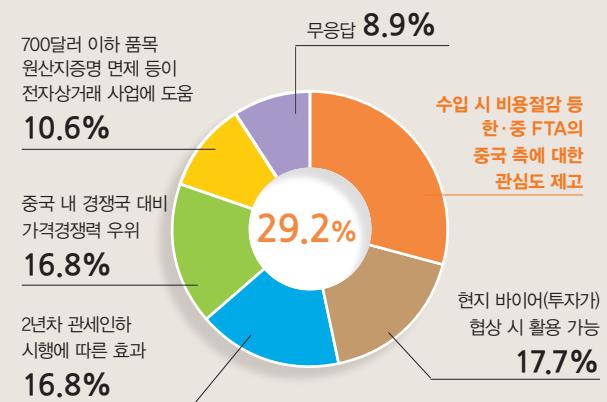
Q1

#### 한·중 FTA 활용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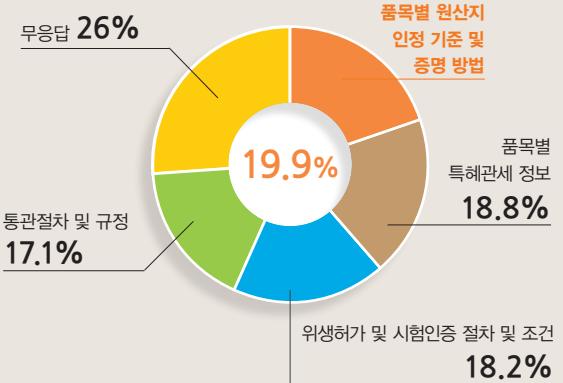
Q2

#### 활용에 따른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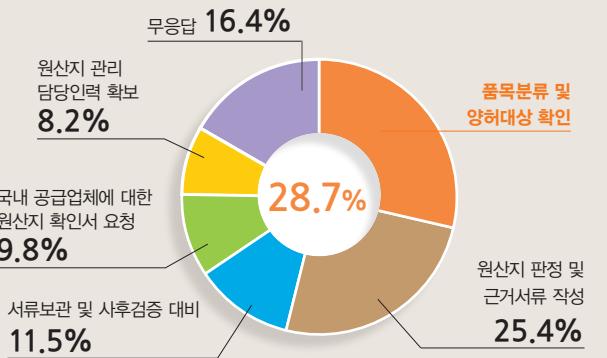
Q3

#### 한·중 FTA 관련 이해가 가장 필요한 부분



Q4

#### 한·중 FTA 활용 애로사항



글 김선녀 기자  
사진 관세청

관세청은 지난 7월 22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세관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 FTA 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다.



#### 2016 FTA 활용 중소기업 지원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 내수기업의 한계를 벗고 수출기업의 날개를 달다

올해로 10회를 맞이하는 이번 발표대회는 우수한 FTA 활용 사례를 발굴·공유하여 중소기업들이 FTA 활용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발표된 8편의 사례는 FTA 활용, 공익관세사 활동, 통관애로해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된 81편의 사례 가운데 2차례의 사전 서면 심사를 거쳐 엄선된 사례로, 발표를 통해 최종적으로 대상 1편, 최우수상 2편 및 우수상 5편을 선정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수출입기업 임직원, 관세사, 세관직원 200여 명이 참석했다. 관세청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체 교역 중 FTA를 활용한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68.9%에 달하는 본격적인 FTA 시대에 돌입해, 우리 기업들이 체결된 FTA를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업들이 오늘 발표대회에서 소개되는 성공 사례를 참고해, 또 다른 성

공 사례를 창출해 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관세청은 FTA가 수출 확대 및 일자리를 창출 등 우리 경제를 견인하는 신(新)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일선 세관 현장에서 FTA 활용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 3.0의 일환인 서비스 정부 구현을 위해 발굴된 사례를 책자·설명회 등을 통해 기업에도 전파해나갈 계획이다.

### FTA 활용 경진대회 수상 기업 사례 ▶

#### 대상

##### (주)이오나노켐

관세사, 대전세관, 수출업체가 최상의 효과 창출

(주)이오나노켐은 중국 가전업체의 LCD TV 생산 확대와 가격인하로 국내 LCD TV 생산업체의 경쟁력 하락과 40% 매출 하락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조건으로 수출물품 구매를 희망하는 최초의 바이어를 소개 받게 된다. 하지만 기관 FTA 무료 컨설팅 결과 수출물품과 원재료의 HS 4단위가 동일하여 원산지 불충족 의견을 듣고 수출 적신호가 켜진다. 문제 진단 후 대전세관 컨설팅을 통해 수출물품의 품목분류 오류 가능성과 원산지 충족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이에 대전세관 공익관세사가 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재확인하고 수출물품 품목분류사전 심사 신청 결과 수출물품과 원재료의 HS 4단위가 상이한 것을 확인한 뒤 원산지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한·중, 한·EU, 한·아세안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FTA 원산지관리역량을 강화하고 타 협정 수출기반을 마련했다.

#### (FTA 활용법) C/O 발급 수출 기반 확보! 환급으로 재정을 탄탄히!

- ★ 수출계약 확보(6만불), '16년 100만불 수출 기반 확보
- ★ 자동간이정액환급업체 등록 수출과 환급으로 재정기반 건실화

#### 최우수상

##### (주)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까다로운 화학 검증,  
원산지 보증기준 활용으로 극복

1987년 설립한 (주)한국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은 자본금 126억원, 매출액 2,900억원, 사원수 245명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폴리아세탈 및 Nylon, PBT Compounding 제조·판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한·EU FTA의 발효에 따라 생产业목의 관세가 즉시 철폐됨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시장개척 가능성이 확인했다. 매월 컨테이너 10개 이상의 해외 수출을 하고 있고, 유럽으로도 매월 3만 불 이상 수출하고 있다. 한·EU FTA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이 없어, 인증수출자 인증이 있는 수출자를 통해 간접수출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미 CBP로부터 수출품에 대한 사후검증 소명자료 제출 요청을 받게 되었다. 기한 내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불충족 예비판정(1차 대응실패)을 받았고 수입자와의 거래 단절 및 회사에 큰 손실발생 우려가 생겼다. 이에 서울세관의 적극적인 컨설팅 지원을 받았다. 업체 담당자를 교체하고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상담을 통해 대응방법을 강구하여 기한 내 2차 서류를 제출했다. 또 ‘Chemical Reaction’ 및 ‘CTH with Minimus Rule’을 중심으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입증했고 이후 미 CBP로부터 원산지기준 충족 최종결정 결과 통보를 받게 되었다.

#### 최우수상

##### 보령메디앙스(주)

위기를 기회로!  
대륙의 중심을 사로잡다

보령메디앙스(주)는 수유젖병, 젖병세제 등 유아생활용품 생산업체로 유아생활 부문의 대표기업이다. 출산율 저하 및 유아용품 해외직구족 증가로 내수 시장의 어려움을 겪던 중 중국 산아제한 정책 폐지로 인한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중국 시장으로 진출했다. 이에 세계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는데 바로 한·중 FTA의 활용이었다. 이에 FTA 및 원산지 규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인천세관 YES FTA컨설팅 사업 지원을 받았다. 협정상대국의 HS 확인 가능한 공식서류가 필요했는데 중국 천진법인 수입신고필증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했다. 또 OEM 생산 반제품의 원산지 확인을 위해 협력업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했고, C/O 발급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절감해 FTA-PASS 시스템을 구축했다.

#### (FTA 효과) 중국 시장 수출 및 OEM

##### 생산업체의 매출 동반 상승

- ★ 관세절감으로 가격경쟁력 상승, 한류, 산아정책 폐지 → 중국 시장 성장 → 2016년도 대중 수출액 350억원(전년대비 80%↑)
- ★ 내수 시장 정체로 위기를 맞은 유아용품 업계의 신시장 개척 및 산업 활성화 → 고용 증대, OEM 생산업체 매출 동반 상승

## 다자무역체제 표류에 보호무역의 위기까지

# 세계 제3차 대전에 비유될 무역전쟁은 막아야

1948년도 GATT나 1995년 출범한 WTO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무역, 나아가 세계경제를 지탱해 준 자유무역의 상징이자 국제통상규범의 울타리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다. 그러나 최근의 브렉시트(Brexit)사태와 미국 대권주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반(反)자유무역 발언은 지난 15년간 이어진 WTO DDA 표류에서 나타나는 다자무역주의의 위험에 대해 보호무역주의라는 또 다른 위협요소를 가중시키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다자무역협상인 DDA의 표류, 양적완화, 브렉시트, 반(反)덤핑에 반(反)FTA까지 세계 무역이 위협을 받고 있다. 다자무역주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선진국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널리 퍼지고 있다.

갈수록 태산이다. 연일 독설과 망언, 포퓰리즘,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거침없는 발언은 이미 필터와 브레이크 모두를 잊은지 오래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 무역정책이 갖는 민감성을 고려하면, 초기 TPP에 대한 비난을 일삼을 때에만 해도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으로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유무역에 나름의 지지세를 보이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또한 당시 TPP에 대해서만큼은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듯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던 까닭이다. 그러나 이후 NAFTA와 한·미 FTA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그 강도를 높여가던 트럼프가 최근에는 급기야 “WTO는 재앙(The World Trade Organization is a disaster.)”이라며 WTO에서 미국의 철수를 거론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 WTO DDA의 표류로 도마 위에 오른 다자무역주의

세계 제1차 대전 이후 대공황(The Great Depression)을 경험한 각국은 세계경제 복구나 국가재건에 대한 대책 없는 종전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이것이 국가별 국수주의와 자국이기주의를 촉발, 또 다른 (무역)전쟁–이른바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이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특히 무역질서를 바로 잡아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및 무역을 추구하고자 1948년 GATT를 설립했고, 95년 WTO가 이를 대체했다. 회원국 163개국의 다자체제를 중심으로 하며 스위스 제

네바 주재의 WTO는 이후 국제 무역규범을 발전시키고 이를 관리, 감독하며 국제통상규범을 바로잡고 강화해왔으며, 자체적으로 무역 분쟁을 조정, 중재, 판결하는 등 세계무역 질서 강화에 크게 일조했다. 그러나 GATT와 WTO 설립 초기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미국과 유럽의 다자무역체제에 대한 더 이상의 동기부여 및 동력 상실, 선진국과 신흥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와 이에 따른 괴리로 2001년 출범한 다자무역협상인 DDA는 현재까지 15년째 표류 중이다. 더 큰 문제는 이것이 장기(長期)표류일 뿐만 아니라 무기(無期)표류라는 사실이다.

## 양적완화, 브렉시트, 반(反)덤핑에 반(反)FTA까지

이처럼 다자무역체제가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또 다른 복병을 만났다. 그것은 바로 보호무역주의의 재림(再臨)이다. 그간 자유무역과 개방경제에 대해선 주로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에 반해 최근에는 일본, 영국, 중국, 미국 등 주요 경제국 및 선진국 위주로 이러한 기조가 퍼지고 있어 더욱 우려가 크다. 일본은 자국 경기회복을 위한 양적완화로 반동에 성공했고 여기에 추가 금융완화까지 언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브렉시트의 영국은 재연(再言)의 필요가 없으며, 중국도 환율개입의혹에 이어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 수입되는 철강제품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키로 하는 등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 조류(藻類)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최근 민주당, 공화당 모두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역설했다. 지난 5월 말 WTO 상소기구 위원이었던 장승화 교수의 연임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하며 다자무역체제와 WTO의 민주성을 크게 위협했고 최근 국산 철강과 세탁기에 대하여 반덤핑, 상계관세, 예비 반덤핑관세를 각각 매긴데 이어 트럼프 후보의 신고립주의, 미국우선주의(Make America First Again)는 최근 선진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화룡점정(畫龍點睛)격이다. 한때 세계경제의 평화적 발전을 지탱해 줄 금융질서, 무역질서를 위해 함께 고민했던 두 지도자 윈스턴 처칠(영국)과 프랭클린 루스벨트(미국)의 국가에서 반세기가 조금 지난 지금 보호무역주의의 최전선에 있다는 사실이 역설적이고 모순적이지 않을 수 없다.



지속적으로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온 미국 대선후보 트럼프는 최근 WTO에서의 미국 철수까지 거론했다.

## 보호무역과 자유무역의 평행노선

그나마 고무적인 사실은 최근 중국 청두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회의다. 9월 초 예정되어 있는 항저우 G20 정상회의 전 마지막 장관급 회의였던 이번 회의에서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은 보호무역을 ‘지향’하고 동반성장(shared growth)을 ‘지향’하기로 입을 모았다는 것이다. 최근 보호무역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국가들이 이에 대하여 지적하지 않고 그저 이상적인 내용만을 골자로 담은 이 공동성명을 가리켜 원론적이며 실행의지가 부재, 미진하다는 비난도 없지 않지만 자유무역에 대한 기조를 재확인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선언을 했다는 사실은 분명 긍정적 첫걸음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제 이를 가시적인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전적으로 각국의 의지에 달려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 국내가 아닌 멕시코 등 해외로 공장을 이주하거나 국내 일자리를 유출시키는 기업에 대해서 세금을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WTO에 반하는 정책적 행위임을 지적 받은 트럼프 후보는 이에 대해 “상관없다(it doesn't matter.)”고 가볍게 답했다. 이어 WTO 탈퇴 후 개별 국가들과 개별 협상의 가능성에 이야기했다. 그러나 세계경제는 그렇게 쉽고 단순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한다. 단순한 셈법의 접근은 돌아키기 힘든 말로(末路)를 가져올 수 있다. 미국이 흔들리면 모두가 흔들린다. 트럼프 후보의 미국우선주의는 어디까지나 미국의 경기회복과 옛 영광을 재현하는 것을 우선시 하는 것이어야지 그간 세계경제를 지탱해 온 자유무역에서 미국이 우선 나가겠다는 철학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❷

글 이민선 관세사(FTA종합지원센터 차이나데스크)

사진 한국경제신문

퍼스널 모빌리티는 도시 내 근거리 이동을 편리하게 도와주는 새로운 이동 수단으로 주차장이나 지하철역에서 집이나 회사까지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데 많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전 품목분류: ②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Personal Mobility Device)**

## 양발형 전동휠 및 전동보드, 전동킥보드 등 HS 8711.90호에 분류

아직 조금 생소하기는 하지만 최근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개인용 이동수단)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들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영화나 만화 속에서만 볼 수 있던 신기한 이동용 기기들을 이제 현실에서도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른바 '퍼스널 모빌리티' 시대다. 이번 달에는 이와 관련한 제품들의 품목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 초소형 개인 이동 수단의 등장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란 최첨단 충전, 동력 기술이 융합된 소형의 개인 이동수단을 말한다. 즉 세그웨이, 나인봇 등 여러 사람이 아닌 혼자서 타고 다니는 기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 전기와 같은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고 보다 자동화된 이동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라고 부르기도 하며, 1~2인용의 소

형 개인 이동 수단에 집중되어 있어서 'マイクロモビリティ(Micro Mobility)'라고도 부른다.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의 시초는 2001년에 출시된 세그웨이(Segway)다. 별다른 조정 장치 없이 두 발을 가만히 올려놓고 운전대를 잡고 타는 디자인은 뛰어난 실용성을 가졌으며, 많은 유명 인사들이 애용해왔다. 당시에는 상하좌우 방향을 감지하는 자이로스코프(Gyroscope)와 기울기(Tilt) 센서 기술이 보편화되지 않아

가격이 매우 비쌌다. 그러나 세그웨이 등장 이후 관련 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종류의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가격이 낮아지면서 일반 소비자의 구매도 증가하고 있다. 이 제품들이 주목받는 이유는 전기를 이용하는 뛰어난 경제성과 함께 작은 크기여서 단거리 이동에 유리하고 휴대하기 편리하다는 장점과 1인 가구의 증가, 그리고 아웃도어 활동을 즐기는 인구의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동차나 대중교통의 이용 없이 단거리를 간단하고 저렴하게 이동하기 원하는 사람들의 필요에 잘 맞는 차세대 이동수단인 것이다.

###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들 HS 8711.90호에 분류

1인용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퍼스널 모빌리티 디바이스에는 공원이나 거리 등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이 포함된다. 그 중 요즘 대세는 단연 전동휠이다. 전동휠은 하나의 바퀴를 단 외발형(One Wheel)과 2개의 바퀴가 달린 양발형(Two Wheel)으로 나뉜다. 그리고 양발형은 다시 운전대가 있는 세그웨이형과 운전대가 없는 것으로 구분된다. 먼저, 양발형을 보자. 대표적으로 운전대가 있는 세그웨이 및 세그웨이의 미니 버전이라 할 수 있는 나인봇(Ninebot) 미니가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이러한 양발형

전동휠은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며 전기의 힘에 의해 작동되며 1인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레저, 출퇴근용 등 단거리 이동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장비에 내장된 회전 및 경사 센서는 탑승자의 무게중심을 모니터하여 탑승자가 앞으로 약간 기울이면 앞으로 이동하며, 뒤로 기울이면 후진하게 된다. 손잡이가 있는 세그웨이의 경우 손잡이를 단지 비틀어 돌림으로써 좌, 우로 회전된다. 두 발을 바퀴 하나씩 올려놓고 가는 양발형 전동보드도 등장하여 최근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두 발을 사용하기 때문에 외발형보다 좀 더 안정감 있는 운행이 가능하며, 크기와 무게가 상기 제품들보다 적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공원 등에서 바퀴 하나로 이동할 수 있는 외발 전동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을 종종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외발형 전동휠은 앞서 설명한 세그웨이와 달리 손으로 잡지 않고 바퀴 하나에 발을 올려서 종아리 부분으로 바퀴를 지탱하면서 이동한다. 상대적으로 적은 크기와 무게 덕분에 휴대가 간편하며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 덕분에 가까운 곳으로 외출할 때 유용한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 밖에, 어릴 적 쟁쟁 달리며 타던 킥보드에 전기모터가 달린 전동킥보드, 그리고 일반 자전거와 달리 페달을 밟지 않고도 오르막길을 편하게 오를 수 있는 전기자전거도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군을 차지하고 있다.

관세율표 HS 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 및 사이드카'가 분류되고, 같은 호 해설서에서 '포장도로(인도)·골목길·자전거 전용도로와 같은 저속 운행영역에서 운행할 용도의 일인용 전기동력 이를 수송 장비를 포함한다.' 이 장비에 적용된 기술은 운전자가 똑바로 서 있는 것을 가능케 해주는데, 운전하는 동안 자이로스코프 센서 및 다중온 보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구성된 시스템은 좌우로 배열되어 각기 따로 움직이는 두 개의 바퀴 위에서 장비와 운전자가 모두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양발형 전동휠 및 전동보드,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 퍼스널 모빌리티 제품은 1인용 개인 이동수단이며, 자동 밸런스 조절기능 및 변속기능이 있고 전동기가 장착된 2륜 수송장비 이므로 기타의 이륜 차량이 분류되는 HS 8711.90호에 분류된다. 외발형 전동휠도 전기 모터로 저속 운행되는 1인용 전기 동력 수송장비로서 HS 8711.90호에 분류되고 있다.❷



요즘 대세인 전동휠은 하나의 바퀴를 단 외발형(One Wheel)과 2개의 바퀴가 달린 양발형(Two Wheel)으로 나뉜다.

글 김기현 중국경영인증컨설팅 대표  
사진 한국경제신문

중국 닭 소비량은 2014년 기준 1,283만 톤으로 세계 닭고기 소비량의 16%를 차지하며, 전 세계 2위를 차지한다.



#### 한·중 FTA 비관세 장벽 이해 및 활용

## 삼계탕 수출 시 국내 양계장부터 가공 공장까지 철저한 준비와 관리 필요

최근 중국 위생부가 인삼을 신자원식품으로 분류하면서 삼계탕의 대중 수출이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인삼이 들어간 우리식품은 중국 수출 시, 보건식품으로 분류돼 중국 당국에 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고 추가비용이 많이 들어 수출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이에 중국의 식품 수입 및 통관에 관한 인허가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나가도록 하자.

#### 중국 수입식품 통관 및 검역 절차 필수 파악 사항

우리 한국기업은 중국 비관세 장벽의 근간이 되는 위생 및 검역·검사조건에 관한 약정을 파악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시행해야 한다. 본 약정은 기술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정부 간 조약의 성격은 띄지 않으나 합의사항 내용 파악에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대한민국 농림축산식품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한국 측'이라 한다)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이하 '중국 측'이라 한다)과 우호적인 협의를 통해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되는 삼계탕에 대한 수의(兽医) 위생 및 검역·검사조건을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조**  
한국 측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에 대한 검역·검사와 검역·위생증명서 발급을 책임진다.

**제2조**  
한국 측은 중국으로 수출하는 삼계탕에 대한 도축, 절단, 가공, 보관, 운반, 검역·검사 항목, 방법, 절차, 기준 관련 법령과 규정을 중국 측에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상기 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 사항을 2개월 전에 중국 측에 통보한다.

**제3조**  
한국 측은 가금류 질병에 대한 예방 및 관리 체계 정보를 중국 측에 제공할 책임이 있고, 제5조에 명시된 가금류 질병의 발생 상황 정보를 정기적으로 중국 측에 제공하여야 한다.

#### 중국 수입식품 통관 및 검역 절차

##### 1) 통관 절차

중국의 수출입 화물 통관절차 단계는 일반적으로 세관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 반·출입 등 4단계를 거친다. 가공무역방식의 수출입화물 및 관세 감면 혹은 추후 납부 대상 수출입화물 및 화물 인출 후 일정기간 내 세관감독이 필요한 수출입화물은 신고 → 화물검사 → 관세징수 → 통관, 반·출입 → 통관종료 등 5단계의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함.

##### 2) 검역 절차

중국으로 가공식품 수출 시, 식품첨가제 등 관련 제품 성분이 중국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이때, 중국 국가 질량감독 검험검역총국(国家质量监督检验检疫总局)에서 실시하는 검역 및 제품 검사, 위생 검사를 거쳐야 한다. 2010년 8월 9일 위생부가 발표한 '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수입허가 및 관리규정'에는 중국에 처음 수입되는 식품에 대한 감독관리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 규정이 정의하는 '식품안전 국가표준이 없는 식품'이란 해외에서 생산·경영되고 수입된 전례가 없는 식품으로 중국정부가 제정한 별도의 식품안전 중국 국가표준에 해당되지 않는 식품으로 이러한 식품의 수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심사기관인 위생부 위생감독센터에 신청서, 배합 및 성분, 생산 공정, 기업표준 및 검사방법, 기준에 부합하는 샘플 및 포장 등을 제출해야 한다.

#### 3) 통관 및 검역 시 제출서류

##### 통관 제출서류

통관신고서, 검사검역 신고서, 검사검역 신고 위탁서, 계약서, 화물 상환서, 수입영수증, 패킹리스트, 중국어 라벨,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품질증명서류, 수입대리업자 승낙서.

##### 검역 제출서류

입국화물검험검역신고서, 수출입계약서,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 원산지증명서, 수출국가에서 사용한 농약, 화학비료, 살초제, 훈증제 및 생산식품의 원료 첨가제, 가공방법 등 관련 서류와 표준.

출처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중국 가공식품 라벨링 및 인증 정보

중국의 모든 포장식품에는 중국어 라벨이 부착되어야 하고, 중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식품에는 중국 위생부에서 발표한 GB 7718-2004에 의거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생산품의 이름, 생산자 명칭 및 주소가 중국어로 표시되어 있어야 하나, 수입상품 경우에는 원생산자의 이름과 주소 대신 생산품 원산지, 수입자 내지 중국 내 판매상의 이름과 주소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고 중국어 간체자로 표기되어야 한다. 해당 라벨을 표시하는 방법은 포장지 직접 인쇄 혹은 스티커 부착방식으로 구분되며, 포장지 직접 인쇄 시, 외국어가 중국어 문자 크기를 초과하지 못한다. 중문라벨을 표시할 때 샘플 및 제출된 라벨 내용과 일치해야 하고 불일치 시 전체적인 라벨링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점검이 필요하다. 수출기업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대중국 수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전에 정확한 중국어라벨을 제작하도록 한다.

#### 중국 진출 희망업체 대응방안

과거보다 통관 검역규정이 완화되었지만, 이와 반대로 사전 등록 및 검사는 더욱 까다롭고, 복잡해졌다. 이는 국내 양계장부터 가공 공장까지 더욱 철저한 준비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반증이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은 향후 대중국 수출 시 관련 법령 사전 숙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중국의 식품 수입 및 통관에 관한 인허가 제도를 명확하게 이해하여 안전한 중국 수출 행보를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

글 손보인 변호사·변리사(법무법인 위민)  
사진 한국경제신문

## 한·중 FTA와 지식재산권: ⑯ 중국 지식재산권 계약 – 저작권

# 저작권은 무등록주의로 권리창출에 특별한 절차 필요 없어



중국 저작권 시장의 성장과 한류 열풍으로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 기업들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저작권에 관한 개별적인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의 규제 및 제한 등으로 직접 투자에 의한 진출은 쉽지 않다.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중국 기업과 해당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 이용 계약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중국 시장에 접근하여, 그에 따른 저작권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다. 저작권 이용 계약은 저작권의 실질적인 종류 및 이용에 허락되는 사업의 형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한 방식의 체결이 가능하며, 그에 따라 주의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많다.

중국은 1990년 저작권법 제정을 시작으로, 1992년 베른 조약과 세계저작권협약, 1993년 제네바 협약에 가입하고, 이후 2007년에는 WIPO 저작권조약(WCT) 및 실연음반조약(WPPT)에 가입하였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함께 가입한 국제 조약들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저작권은 중국에서도 당연히 보호가 가능하다.

중국 저작권 시장은 정체기에 접어든 선진국 시장과 비교하여 고속 성장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시장이다. 얼마 전 총 회원 수 4억 명, 유료 회원 수 1000만 명에 달하는 중국 최대 온라인 음악 서비스 업체인 QQ뮤직은 최근 디지털 앨범 판매 수입이 1억 위안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엔터테인먼트 전문업체 엔트그룹(藝恩)이 발표한 중국 디지털 음악 시장 보고서는 2016년 중국의 모바일 음악 시장 규모는 2015년의 63억7000만 위안보다 큰 폭으로 증가한 96억2000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디지털 음원 시장을 포함한 저작권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기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급성장하는 중국 시장이지만, 그러한 저작권 상품 또는 서비스 시장에 관한 규제와 제한 또한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존재한다. 한·중 FTA를 통하여 저작권 서비스 시장의 접근이 다소 원활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에는 부족하며, 향후 저작권 서비스 시장의 개방에 대한 한·중 실무자 간의 보다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할 잘 지켜봐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기업들은 중국 기업과의 저작권 이용 계약을 통한 간접적인 시장 진출을 도모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에 따라 중국 기

업과의 저작권 이용 계약의 체결이 현재로서는 가장 효과적인 시장 진출 수단이다.

### 1.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의 구성

중국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서의 특별한 형식은 없다. 일반적으로 국제 계약의 형식으로 작성하는 편이며, 저작권의 실질적인 내용이나 이용 범위 또는 형태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여 체결할 수 있다.

일반적인 계약서의 구성은 계약서 작성의 편의상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돋는 목적으로 계약 종류에 따라 기재하는 계약서의 표제, 계약 양 당사자의 명칭, 주소, 연락처 등을 기재하는 당사자 표시, 양 당사자가 해당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전문, 계약의 목적, 특별한 용어나 축약하여 표현할 단어들에 관한 정의, 저작권 이용허락 및 그 범위 또는 형태, 권리주장 및 분쟁을 대비한 저작권 등록, 저작권 이용료(Royalty)의 정도 및 지급 형태, 저작권 이용에 관한 보고서 및 로열티에 관한 회계감사, 계약 관련 제공된 비밀정보의 비밀 유지,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감시 및 대응, 계약에 관련된 금전지급에 관한 세금 부담, 저작권 허락자가 보유한 저작권이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것이라는 저작권의 보증과 그 외의 면책, 저작권 이용자에 의한 권리다툼 금지의무, 계약기간, 통지의무, 계약 해지, 권리포기, 계약의 양도, 불가항력, 재판관할 및 종재, 준거법 및 기준 계약 언어, 완전한 합의 등으로 이루어진다.

### 2.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의 주요사항들

#### 가. 당사자의 표시 및 전문

일반적으로 계약의 표제 다음으로 계약의 당사자, 계약체결일자, 계약 체결지, 전문이 기재된다. 계약의 당사자는 저작권자 및 저작권 이용자를 표시하는 것이므로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보통 중국 기업의 영업집조사본을 제공받아 영업집조 상의 회사명칭 및 주소를 기재하고, 해당 기업의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대표 이름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신분증을 확인하고, 성명, 주소, 국적, 신분증번호 등을 기재한다.

또한 계약 체결 일자를 기재하는데, 계약의 내용에서 계약 체결 날짜를 기준으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리한 계약 체결 날짜가 언제 인지도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계약 효력 발생일과는 구분해야 한다. 계약 체결지는 향후 재판 관할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되도록 하면, 계약 체결지는 한국의 특정 지역으로 정하여 재판 관할권이 우리나라에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전문에는 계약 당사자의 사업내용, 각 당사자의 계약 의사 내용,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계약 당사자의 법적 지위 등이 간단하게 기재될 수 있다.

#### 나. 저작권 이용 허락 및 그 범위 또는 형태

저작권의 이용을 허락하는 권리의 독점적, 배타적, 통상적 이용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이러한 이용허락의 권리 설정 시에는 계약 사업 형태 및 향후 전망, 그에 대한 댓가 정도 등을 검토하여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저작권 이용자에게 제3자 재사용 허락권을 부여할 수 있는데, 계약에 명시적으로 기재해야만 인정될 수 있는 권리이다. 저작권 이용허락 계약에서 제3자의 재사용 허락은 무형성을 가지고 무한 복제가 가능한 저작물의 특성 상 가치성이 높고 매우 중요한 권리이므로, 제3자 재사용 허락을 설정하는 경우 주의해야 한다.

저작권의 이용 허락이 되는 대상을 정하고 그 대상의 이용범위 및 형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이용범위 및 형태의 합의함에 있어 저작권 이용료의 형태에 따라 양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다. 저작권 허락자는 그 이용범위 및 형태를 보다 명확하게 기재하여 해당 저작물의 다른 이용 가치를 남겨둘

필요가 있다. 이는 독점적 계약을 하더라도 그 이용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것은 제3자와의 다른 계약에 이용하여 또 다른 수입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 이용 형태는 구체적인 저작물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리하므로, 해당 저작물의 특성에 따라 예를 들어, 음악 저작물인 경우 디지털 MP3 파일 또는 CD 형태, 특정 인터넷 사이트만을 통한 유통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으며, 그 이용의 지역적 범위를 저작물에 따라서 제한 할 수도 있다. 이용 형태를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유사 형태의 저작권 이용 기술이 도입되면 분쟁이나 이견의 소지가 있으므로, 향후 새롭게 도입될 기술에 따라 예상되는 형태에 대한 취급도 규정해 놓는 것이 좋다.

### 다. 저작권 이용료의 정도 및 지급 형태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의 이용 대가 즉, 저작권 로열티는 지급형태에 따라 정액 로열티와 경상 로열티의 나뉘며, 개별적 계약의 특성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이들을 조합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정액로열티는 저작물의 제조 수량 또는 판매의 정도에 상관없이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으로, 저작권 이용자의 사업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일정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점에서 최소 일정 수입을 보장하고 싶은 경우에 채택할 수 있는 방식이다. 경상 로열티는 정액로열티와 달리 저작권 이용자의 사업 상황에 따른 제조 수량 또는 판매량에 따라 그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로열티를 지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경상 로열티의 경우에도 최초 착수금조의 일정 금액을 최초에 지급 받고 이후 일정 요율의 로열티를 추가적·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저작권 이용료의 정도 및 지급 형태를 합의함에 있어, 저작권 허락자는 저작권 이용 범위에 합당한 저작권 이용료의 정도인가, 향후 이용자가 지급하는 저작권 이용료에 대해서 검증이 가능하가, 해당 계약에 의해서 지급받을 수 있는 예상 수익액을 만족하는가 등을 먼저 고려해 보아야 한다. 또한 향후 제3자에 의한 저작권 침해 시 저작권 이용료 및 그 형태는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고려에 직접적으로 참작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다른 사업적인 이유만으로 매우 적은 저작권 이용료를 설정하는 것은 향후 저작권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❷

글 유영진 관세사(세정관세법인)  
사진 한국경제신문



## 실전 FTA 활용 노하우: 한·콜롬비아 FTA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②

# 수입신고시점 ‘협정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수입신고서가 작성된 경우’로 명확해

2012년에 타결되었으나 콜롬비아 측의 국회비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교착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콜롬비아 FTA (이하 ‘한·콜 FTA’)가, 지난 6월 15일 콜롬비아 측의 국내 비준 절차를 완료하였다고 통보함으로써, 통보 접수일인 6월 15일을 기점으로 30일 후인 7월 15일에 발효되었다. 여기서는 지난 호에 이어 한·콜 FTA 협정문을 바탕으로 주요 내용 및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1. 역내가치포함비율(RVC: Regional Value Content)

한·콜 FTA 협정문 상 제3장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절차에서는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 중 하나로서, 제3.3조에 “역내가치포함비율(Regional Value Content)”을 규정하고 있다. 협정문에서는 ‘부속서 3-가에서 역내가치포함비율 요건을 명시하는 경우, 역내가치포함비율은 다음의 방법 중 하나에 따라 산정된다.’라고 하면서 공제법/집적법/순원가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모든 품목에 대해 이를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순원가법(Net Cost Method)의 경우에는 ‘자동차 상품을 위한(for Automotive Goods)’이라고 하여 별도로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동차 상품의 범위에 대해서는 주석을 통해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의 제8701호 내지 8705호(자동차) 및 제8706호(샤시)”로 그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다. 대상 품목들의 품목별 기준(PSR)을 살펴 보면 각 HS코드 6단위 별로 집적법/공제법/순원가법을 통한 총족비율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으니 이를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원산지 판정이 가능하다.

순원가법의 적용이 가능한 자동차 상품을 제외하고, 다른 품목의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집적법(Build-up Method) 및 공제법(Build-down Method)이 선택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각 HS코드 별로 집적법 및 공제법의 총족비율을 모두 기재하여 선택적용이 가능하도록 표시하거나, 또는 공제법만을 별도로 기재하여, RVC비율 계

산시 공제법만을 사용하도록 구분하고 있으니 이에 유의하여야 한다.

#### 1. 집적법 및 공제법 선택적용 예시

HS 8418.29(기타의 가정형 냉장고)의 PSR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변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1. 집적법 30퍼센트 이상, 또는
- 2. 공제법 40퍼센트 이상

#### 2. 공제법 단독적용 예시

HS 8418.21(입축식 가정형 냉장고)의 PSR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서 변경된 것, 또는 공제법으로 역내가치포함비율이 45퍼센트 이상인 경우에는 세변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3. 집적법/공제법/순원가법 선택적용 예시

HS 8701.10(보행운전형 트렉터)의 PSR

아래의 역내가치포함비율이 발생한 경우에는 세변변경이 요구되지 않는다.

- 1. 집적법 35퍼센트 이상, 또는
- 2. 공제법 45퍼센트 이상, 또는
- 3. 순원가법 35퍼센트 이상

### 2. 원산지증명 방식

한·콜 FTA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는 자율발급 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협정 부속서 3-다”의 양식을 사용하여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는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증명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수출자의 인지, 또는

나. 생산자가 제공한 원산지 증명서, 또는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면 신고서

상기 표의 “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생산자의 원산지증명서 등 서면을 통한 것이 아니므로 실제 원산지검증이 행해지는 경우 이에 대한 원산지 입증의 책임을 수출자가 1차적인 원산지 입증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입국 관세관청 입장에서도 생산자가 아닌 수출자가 단순히 자신의 인지를 바탕으로 원산지를 판단하였다고 한다면 원산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가질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고 따라서, 원산지 검증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실제로도 정확한 원산지의 사전판정이나, 생산자의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근거 서류 없이 자의적으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라면 허위 또는 잘못 발급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한·콜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보류하는 것을 권고한다.

### 3. 협정 발효일 전 작성된 원산지증명서(제3.18조 8항)

#### 8. 수입 신고서가 이 협정의 발효일 또는 그 후에 작성된 원산지 상품의 경우, 각 당사국은 협정 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증명서를 수락한다.

일부 협정의 경우에도 협정이 발효된 이후에 수입된 물품

에 대해, 협정 발효일 이전에 작성된 원산지증명서를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대부분 ‘협정 발효 이후 당사국의 영역내로 수입된(imported into the territory of a Party on or after the date of entry into force of this Agreement)’이라는 표현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입이 된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입항 시 or 수입신고 시 or 수입신고수리 시)에 대해서는 기준이 불명확해 각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콜 FTA의 경우에는 “협정발효일 또는 그 이후에 수입신고서가 작성된 경우”라고 하여 수입신고시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협정발효일 전 6개월 이내에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증명서”라 하여 수락 가능한 원산지증명서의 사전 작성의 시점을 명확히 정해두고 있다.

어떻게 보면 매우 간단한 내용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불분명하고 모호했던 협정 상의 규정을 여러 협정 체결 과정을 거치며 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해나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많은 국내 생산자 및 수출자들이 신규 발효 협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어려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협정 발효 일 전에 발급된 원산지(포괄)확인서의 유효성 부분이다. FTA종합지원센터에서 근무할 당시 이러한 질문을 받는 경우, 상기와 같은 협정 발효 전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허용하는 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유효성에 대해 상담을 해주기도 하였다.

즉, 수출물품의 생산에 투입되는 원자재·부분품의 경우에는 제조공정의 흐름상 그 이전에 생산되어 납품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당연히 협정발효일 이전에 발급된 원산지(포괄)확인서 또한 유효할 것이며, 실제로 협정 발효 당시에 협정 적용된 원산지 물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들어온다면, 발효일 이전의 생산 및 구매 자료를 근거로 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내에서 발급되는 원산지(포괄)확인서와 같은 입증서류는 그 발급절차 및 유효성에 대해 협정에서 규정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협정발효일과의 관계보다 실제 국내 납품한 물품의 원산지 등 그 실질이 더욱 중요하다 할 것이다.❷

글 유영웅 관세사(관세법인 네오)



### FTA 사후 검증팁: 효과적인 한·미 FTA 사후검증 서류 작성법⑦

##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구하기 위한 계산식 협정에서 정한대로 기재

지난 호에는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방법에 대한 설명 부분인 Chapter III의 세부목차 중 3, 4번 목차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수출물품에 대한 HS 코드 분류와 그에 따른 한·미 FTA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PSR)에서 규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하여 설명하고, 예시 물품인 'Stroller part'의 원산지결정기준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을 설명하기 위하여 BOM 데이터 중 품명, 6단위 HS 코드 등을 요약하여 기재하였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데이터를 근거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는 과정을 검증요원에게 보여주는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 Materials to Demonstrate Product Country of Origin under the UKFTA

- I. About Exporter/Manufacturer)
- II. CBP Form 28, Request for Information
-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 IV. Additional Information
- V. Evidence/References

### 한·미 FTA 하에서 물품의 원산지 소명 자료

- I. 수출자 / 제조자 소개
- II. 검증대상 품목에 대한 설명
- III.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 IV. 추가 정보
- V. 관련 증빙자료

## Chapter III Tariff Classification and Country of Origin Certification under the UKFTA

Chapter III의 목차를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보았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 목차를 세분화한 것으로 해당 내용만 포함된다면 축약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 |   |                   |
|---|-------------------|
| 1. Exported Goods                       | 1. 수출물품에 대한 기본 정보 |
| 2. Tariff Classification(HS Code)       | 2. 품목분류           |
| 3. Criteria of the Origin Determination | 3. 원산지결정기준        |
| 4. List of Materials                    | 4. 원재료 리스트        |
| 5. Decision                             | 5. 원산지 판정         |
| 6. Result of Determination              | 6. 원산지 판정 결과      |

### 5. Decision (원산지 판정)

수출물품 HS 코드에 따라 협정에서 규정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충족방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원산지결정기준별로 증명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작성방법에 조금 차이가 있다.

#### ◎ 부가가치기준

부가가치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재료의 HS 코드뿐만 아니라 단가와 소요량 및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중요하다. 역내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여야 하므로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비의 구분이 명확해야한다.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구하기 위한 계산식은 협정문을 참고하여 협정에서 정한대로 기재하는 것이 좋다. 부가가치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도 협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협정을 확인하여 변형하지 말고 그대로 사용하여야 한다.

### 한·미 FTA 협정문상 제8715호에 대한 품목별원산지결정기준

#### ARTICLE 6.2: REGIONAL VALUE CONTENT

1. Where Annex 6-A specifies a regional value content test to determine whether a good is originating, each Party shall provide that the importer, exporter, or producer may calculate regional value content based on one or the other of the following methods:

(a) Method Based on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Build-down Method)

$$RVC = \frac{AV - VNM}{AV} \times 100$$

(b) Method Based on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Build-up Method)

$$RVC = \frac{VOM}{AV} \times 100$$

where,

RVC is the regional value content, expressed as a percentage;

AV is the adjusted value of the good;

VNM is the value of non-originating materials, other than indirect materials, acquired and used by the producer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VNM does not include the value of a material that is self-produced; and

VOM is the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other than indirect materials, acquired or self-produced and used by the producer in the production of the good.

협정에서 설명한 계산식을 토대로 실제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준다. 예시는 공제법을 사용하여 역내부가가치비율을 계산한 경우로서 조정가격(AV)에서 비원산지재료비(VNM)를 공제하여 역내산 부가가치 비율을 계산하게 된다. 따라서 BOM의 내용 중 원재료 목록, 금액, 원산지에 대하여만 요약하여 기재하였다. 역내산원재료 a, b에 대해서 원산지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역내산임을 입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기준 중 공제법(Build-down)을 사용한 경우 예시

#### 예시

The rule of origin that our company used is, a regional value content of not less than 45 percent under the build-down method. As you can see from the computation below, 'AAA' is 87.5%, which is way over 45% build-down method.

- Name of Model : AAA
- Value of AAA (FOB) : 200,000 won

Part name	Value in won(₩)	Origin
a	100,000	KR
b	50,000	KR
c	10,000	Unknown
d	15,000	Unknown

Method Based on Value of Originating Materials : Build-down Method

$$RVC = [(AV - VNM) / AV] \times 100$$

AV : 200,000 won

VNM : c+d = 25,000 won

$$RVC = [(200,000 - 25,000) / 200,000] \times 100 = 87.5\%$$

#### ◎ 세번변경기준

세번변경기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출품에 대한 HS 코드와 원재료의 HS 코드를 비교하여 일정수준 변경되었음을 증명적으로 설명하여야 한다. 따라서 비원산지재료의 품명과 HS 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원산지재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를 갖추고 있음을 설명하고 첨부서류로서 증명하도록 작성하는 것이 좋다.

## 전국 FTA 활용 지원기관 안내

#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지난 호 예시품목인 Stroller part에 대한 세번변경기준 충족방법 예시

이미 Chapter II와 III에서 완성품과 원재료의 HS 코드,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해서 완성품 HS 코드와 원재료 HS 코드가 변경되었음을 보여주는 정도로 기재 한다.

#### 예시

Originating goods(KOREA), in compliance with KOREA-US FTA(UKFTA)

- 1) Stroller part Tariff Classification(HS) : 8715.00
- 2) Criterion for Origin Determination : CTH (Change of Tariff Heading)
- 3) Summary of Origin Determination

Material	HS Code (6 digit)	Change in Heading	Supporting Documents
Nylon/-----	5903.20	Satisfied	tax invoice or P/O
Poly ----- film	3920.61	Satisfied	tax invoice or P/O
P-----	3920.49	Satisfied	tax invoice or P/O
Nylon/-----	5407.42	Satisfied	tax invoice or P/O
Zipper	9607.19	Satisfied	tax invoice or P/O
Slider	9607.20	Satisfied	tax invoice or P/O
----- tape	5801.31	Satisfied	tax invoice or P/O
----- hook	3926.90	Satisfied	tax invoice or P/O
----- band	5407.92	Satisfied	tax invoice or P/O
thread	5401.10	Satisfied	tax invoice or P/O

### 6. Result of Determination(원산지 판정 결과)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함을 설명하는 마지막 결론 부분이다. 5번 목차에서 이미 설명을 하고 있지만 별도의 목차로 구성하여 확실하게 FTA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다.❷



#### 예시 1

Originating Good (KOREA) satisfying requirement of heading change of materials in accordance with KOREA-US FTA (UKFTA)

#### 예시 2

The goods are manufactured in KOREA and would meet the required tariff shift.

Based on the facts provided, the goods described above are eligible for UKFTA preferential treatment, because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HTSUS General Note 33(b)(ii)

FTA 활용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해 수출경쟁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FTA는 바로 중소기업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FTA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거나,

궁금한 것이 있다면 주저 말고 FTA 지원 기관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 서울

- FTA무역종합지원센터 (국번 없이) 1380
- 서울본부세관 02-510-1568
- 중소기업진흥공단 본사 02-769-6947, 6957
- 서울지역본부 02-6678-4115

#### 경기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북부) 031-995-7480~1
- FTA활용지원센터(경기 남부) 031-546-6772, 6770
- 평택직할세관 031-8054-7042
- 중소기업진흥공단 031-259-7904

#### 강원

- FTA활용지원센터 033-257-4071
- 중소기업진흥공단 033-259-7634

#### 충북

- FTA활용지원센터 043-229-2729, 2722
- 중소기업진흥공단 043-230-6833

#### 경북

- FTA활용지원센터(경북) 054-454-6601(134)
- FTA활용지원센터(경북동부) 054-274-2233
- 중소기업진흥공단 054-476-9312

#### 대구

- FTA활용지원센터 053-222-3111~2
- 대구경북본부세관 053-230-52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3-601-5262

#### 울산

- 울산FTA활용지원센터 052-287-3060~1
- 중소기업진흥공단 052-703-1132

#### 부산

- 부산FTA활용지원센터 051-990-7125
- 부산경남본부세관 051-620-6637
- 중소기업진흥공단 051-630-7404

#### 경남

- 경남FTA활용지원센터 055-210-3043
- 중소기업진흥공단 055-212-1373

#### 전북

- FTA활용지원센터 063-711-2042, 2045
- 중소기업진흥공단 063-210-9911

#### 전남

- FTA활용지원센터 061-288-383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1-280-8040

#### 광주

- FTA활용지원센터 062-350-5863
- 광주전라본부세관 062-975-8051
- 중소기업진흥공단 062-600-3051

#### 제주

- FTA활용지원센터 064-759-2577
- 중소기업진흥공단 064-751-2054

글 최효찬 자녀경영연구소 소장(문화박사)

사진 한국경제신문



### 최효찬의 인문학 강의: ②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

## 예술은 천재의 전유물인가?

헝가리 유대계 출신의 아르놀트 하우저(1892~1978)가 쓴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1951)'에 따르면, 개개의 사회는 그 사회의 요구에 최적화된 예술형식을 고안해낸다. 하우저는 그의 저서를 통해 고대에서 현대까지 인류역사를 탐사하며 예술이 사회적 산물이라는 이론과 예술의 영원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하지만 예술이 '천재'의 전유물인 시대는 끝이 났다. 이제는 사회에서 갖는 예술가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때이다.

요즘 우리가 즐겨 읽는 소설은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주도적 문학 장르가 되었다. 그것은 소설이 당대에 제기된 개인주의와 사회 사이의 대립을 가장 포괄적으로 깊이 다루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어떤 다른 문학적 장르에서도 당시 부르주아 사회의 모순이 그렇게 강력하게 표현한 것은 없고, 개인의 투쟁과 패배가 그렇게 박력 있게 묘사된 곳은 없다는 것이다. 이를 표현하기 위해 등장한 문학사조가 낭만주의라고 하우저는 주장한다. "낭만주의는 소설에서 개인과 세계, 꿈과 생활, 시와 산문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의 가장 적합한 서술방법을 발견하고,

이 갈등의 유일한 해결처럼 보이는 체념의 가장 깊이 있는 표현을 찾아냈다." 하우저는 인간 소외의 문제를 최초로 민감하게 포착한 낭만주의가 그런 의미에서 현대 예술의 기점이라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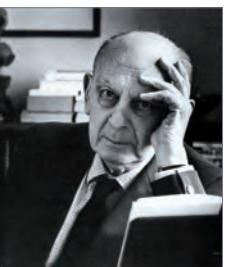
### 예술에서 '창조적 천재'의 등장

흔히 문학과 예술에서 가장 대조적인 사조를 꼽으라면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이다. 고전주의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조화로운 세계를 지향한다. 고전주의자는 스스로를 현실의 주인이라고 생각했다. 고전주의는 18세기 말 프랑스 대혁명이 시작되자 혁명적 고전주의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고전주의와 달리 낭만주의는 수많은 얼굴을 하고 있어 정확히 낭만주의가 무엇인지를 규정하기 힘들다. 먼저 하우저는 흔히 말하는 '질풍노도'(감정·상상력·개성의 전적인 해방을 추구한 18세기 후반 독일의 문학운동)는 초기 낭만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한다. 계몽주의가 이성에 의해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으며 언젠가는 해명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면, '질풍노도'는 이와 반대로 세계를 근본적으로 불가해한 것, 신비스러운 것, 의미가 없는 것으로 간주했다. "계몽주의가 현실을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다는 확신의 결과였다면, '질풍노도'는 이 현실에서 길을 잊고 버려져 있다는 느낌의 표현이다." 이때 정신적 지도자가 나타나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어야만 하는데 예술에서의 창조적 천재(Genie) 개념은 이때 등장했다. '질풍노도'의 관점에서 예술적 창조는 이제 신적인 영감, 맹목적 직관 및 헤아릴 길 없는 기분과 같은 불가해한 근원들에서 시작하는 신비한 과정으로 보이게 되었다. 여기서 천재는 이성의 구속에서 해방되



낭만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 패배를 맛보았으며 정치적 환멸을 경험한 혁명 이후의 낭만주의는 무엇보다도 '예술적 자유'를 낳았다.



**아르놀트 하우저(1892~1978)**  
독일계 헝가리인으로, 오랜 기간 동안 영국에서 살면서 미술사, 정신분석학, 예술 이론, 미학, 사회사, 문화사, 미술심리학 등의 여러 학문의 경계를 넘나든 미술사학자이다.  
하우저는 예술의 형식적인 면에 가치를 두었으나, 예술사회학자로서 사회역사적인 관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졌다.

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비적 힘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천재는 예감한다. 즉 그의 감정은 관찰에 선행한다. 천재는 관찰하지 않는다. 그는 보고 느낀다." 질풍노도의 예술철학에서 천재는 "반항적이고 초인간적이며 신적인 거인"이라고 하우저는 강조한다.

### 사회적 산물로서의 예술

그런데 초기(전기) 낭만주의는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 다시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 패배를 맛보았다. 18세기만 해도 작가(천재)는 서양세계의 정신적 지도자였지만 혁명이 실패로 돌아가자 작가들 대부분은 이제 완전히 무력하게 되어버렸다는 것을 알고 자신들을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꼈다. 정치적 환멸을 경험한 혁명 이후의 낭만주의는 무엇보다도 '예술적 자유'를 낳았다. 예술적 자유는 이제 더 이상 '천재'의 특권이 아니라 예술가나 재능 있는 개인이면 누구나가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낭만주의 운동은 전통과 권위, 그리고 규칙이라는 원칙 자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해방투쟁이 된다. 어느 의미에서는 근대의 모든 예술은 이러한 낭만적 자유운동의 결과다."

혁명의 진원지인 프랑스의 낭만주의는 왕정복고의 대변인 역할을 하다 1820년대의 후반에 이르러 자유주의적 운동으로 발전하여 정치적 혁명에 대응할 만한 예술적 목표를 정립하기에 이른다. 즉 빅토르 위고가 "낭만주의는 문학의 자유주이다"라는 원칙을 선언한 1827년에 이르러 변모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위고의 변신은 가히 '혁명적인 변신'이라고 할 수 있다. 나폴레옹의 철저한 반대자였던 위고는 태도를 바

꾸어서 나폴레옹의 이름으로 프랑스의 영광을 말하는 보나파르트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대변자가 되었다. 위고는 처음에는 부르봉 왕가의 충실한 지지자였고, 다음에는 7월 혁명(1830년)에 참가해 7월 왕정에 봉사했으며 마지막에는 루이 나폴레옹(2월 혁명, 1848년)을 지지했다. 그 후 위고는 과격한 공화주의자가 되었다. 위고는 그의 문학을 둘러싸고 벌어진 싸움에도 불구하고 결코 혁명적 정신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이에 대해 엥겔스는 "예술적 진보성과 정치적 보수주의는 완전히 양립할 수 있으며, 현실을 충실히 올바르게 묘사하는 모든 정직한 예술가는 본래적으로 그 시대에 계몽적, 해방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그러한 예술가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반동적, 반자유주의적 요소들의 이데올로기의 밀바닥을 이루는 인습과 상투어, 터부와 도그마들을 파괴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

하우저는 예술이 신비의 영역이 아닌, 사회적으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경제활동의 일환으로 본다. 이를 통해 하우저는 고대에서 현대까지 인류역사를 탐사하며 '예술은 사회적 산물'임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그는 '예술사의 철학'에서 예술 작품의 사회적 결정론과 형식주의(장르) 모두를 비판적 거리를 두면서 예술과 사회의 관계를 변증법적 통일이 아닌 '역설적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빅토르 위고에서 드러난다. 위고는 왕당파와 보나파르티즘을 송배했지만 그의 작품은 자유주의적, 휴머니즘적으로 독자들에게 수용되고 있듯이 말이다.

비록 예술 혹은 문학작품이 모순적 인간에 의해 창조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술은 영원하다'는 말은 이 책에서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하지만 예술이 '천재'의 전유물인 시대는 더 이상 오지 않을 듯싶다. 작가 혹은 예술가가 정신적 지도자 역할을 했던 시기는 세계가 불가해한 것으로 비춰지던 질풍노도의 시기이거나 정치적 혼란기인 혁명 때였다. 세계적인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나고 혁명의 이상이 환멸로 바뀌면 혹은 지금과 같은 자본주의의 혼멸이 심화되면 그 어떤 천재도 그 혼멸을 지우는 역할을 하기에는 역부족일 터이다. 그렇다면 오늘날의 작가 혹은 예술가는 어떻게 자리매김되어야 할까. 이 책을 읽으면서 줄곧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❷

정리 김은진 기자  
사진 한국경제신문

# FTA NEWS

## 제10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 개최 발효 12년차 맞이한 한·칠레 FTA, 중남미지역 수출교부보 역할 한 것으로 평가



올해로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FTA가 제10차 FTA 자유무역위원회를 열었다. 두 나라의 수석대표가 참석해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상의했다.

제10차 한·칠레 FTA 자유무역위원회가 칠레 아태지역 특명전권대사 프레이(Frei) 전 대통령 방한 계기에 지난 7월 11일 서울에서 열려 12년 차를 맞이한 한·칠레 FTA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자유무역위원회는 우리 측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 칠레 측 파블로 우리아(Pablo Urria) 외교부 양자경제국장을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한·칠레 FTA는 2004년 발효된 한국 최초의 FTA로, 발효 직후 대(對)칠레 교역량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양국 교역 확대는 물론, 당초 한·칠레 FTA가 목표한 바대로 중남미지역 수출교부보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현재 발효 12년차를 맞이한 한·칠레 FTA를 통해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는 96.2%, 칠레 측은 96.5%의 관세를 철폐했고 2017년에는 철강, 섬유 및 의류에 대해 칠레 측 관세가 완전 철폐된다. 그러나 지난 협정 발효 후 10여년이 지나면서 양국의 변화된 통상환경을 감안할 때 FTA를 통한 추가적인 이익 도모를 위하여 한·칠레

FTA 협정 개선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 내용에 따라 작년 7월에는 제9차 한·칠레 FTA에서 FTA 개선의 추진방향에 대한 예비 협의가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보다 심화된 한·칠레 FTA 개선의 틀을 다지고 양국 간 개선관련 입장과 진행상황 등을 공유했다. 향후 한·칠레 FTA 개선은 통상절차법에 따라 공청회 개최, 국회 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는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개선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자유무역위원회에서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회원국들의 비준 동향 등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관련 논의도 함께 진행하며, 양측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가입 시 칠레 측의 협조와 지원 방안 등을 긴밀한 협의를 진행했다.

##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 개최 결과 'KOREA DESK 설치'를 통한 양국 통상협력



지난 7월 5일 양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을 가졌다. 이번 회담을 통해 미얀마 정부 내 코리아 데스크 설치 등 양국 통상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을 방문 중인 딴 민(Dr. Than Myint) 미얀마 상무부장관과 지난 7월 5일 오후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한·미얀마 통상장관회담을 갖고 양국 통상협력확대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형환 장관과 딴 민 장관은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미얀마가 더욱 개방되어 양국 경제통상협력이 본격화 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주형환 장관은 미얀마 진출 한국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구로 Korea Desk를 미얀마 정부기관 내에 설치하여 선제적으로 양국 경제협력 확대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딴 민 장관은 한국의 KOTRA를 모델로 한 미얀마무역진흥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한국의 지원 사업 중 무역정책자문·조직설계·역량 강화를 중심으로 한 1단계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했다. 특히 미얀마 무역담당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한초청을 통한 무역현장 경험 전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계속된 한국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은 짧은 기간 내에 산업화를 이룩한 한국의 경험 공유를 통해 미얀마가 효과적으로 산업화와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 베트남과 비관세장벽 협력 확대 제1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확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 산업통상부(MOIT) 및 기술표준원(STAMEQ)과 함께 제1차 한·베트남 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7월 1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었다. 이날 회의는 양국 정부 관계자가 무역기술장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이번 무역기술장벽 위원회는 한·베트남 FTA 발효 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 양국 간 협력분야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인하고, 합의된 협력 분야에 대해서는 시험·인증 분야 상호인정, 기술규제 정보교류 및 표준화 협력을 통해 무역기술장벽을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우리 측은 주요수출품목인 전자제품 분야의 우선적인 협력을 제안하였고, 베트남 측은 표준과 시험·인증 분야의 기술 협력을 제안했다. 양국은 2015년 12월 FTA가 발효된 이후 양국의 시험인증 기관 간에 체결한 전자제품 시험·인증 분야의 협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6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베트남 인증센터(QUACERT)는 상호인정 MOU를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베트남에 전자제품 수출시 안전과 전자파적합성 분야의 베트남 품질인증(CR 마크) 획득에 시간과 비용의 단축이 가능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은 베트남의 기술규제에 대한 우리 업계의 애로 사항을 전달하고 양측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❷



## Information



한·콜롬비아 FTA 발효 계기

### 중남미 진출전략 설명회 개최

한국무역협회는 지난 7월 15일 한·콜롬비아 FTA가 발효됨에 따라, 콜롬비아 시장진출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중남미 3대 시장 중 하나인 콜롬비아 시장 진출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 행사개요 |

- 일시 2016년 8월 30일(화) 14:00
- 장소 인천 송도 훌리데이인 2층 볼룸
  -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51
  - 인천 2호선 센트럴파크역 2번 출구 연결
- \* 무료주차
- 참가대상 무역업계 및 유관기관 관계자

#### | 프로그램 |

시간	주요내용
13:30~14:00	접수 및 등록
14:00~14:10	FTA종합지원센터 소개 및 지원사업 안내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안병선 대리
14:10~15:40	한·콜롬비아 FTA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김한솔 관세사
15:40~15:50	Coffee Break
15:50~16:20	콜롬비아 시장 특성과 수출 유망품목 -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 민경실 연구원
16:20~17:10	중남미시장 진출 성공사례 및 활용전략 소개 - LG CNS 하찬호 팀장

\*상기 프로그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하단의 신청하기 버튼 클릭 후 신청서 작성)
- 선정방법 선착순 마감
- 참가비 무료

#### | 문의처 |

- 한국무역협회 인천지역본부 032-420-0011



## 독자의 소리

‘함께하는 FTA’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제주FTA활용지원센터 컨설턴트들의 조력자 역할 덕분에 제주산 용암해수로 만든 생수 수출의 난관을 무사히 통과한 사례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FTA활용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 그 자체가 애국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갑수 전남 장성군 삼계면

‘자국 내 구매력 확대, 새로운 글로벌 생산기지로 떠올라’를 읽고 최근 신흥 경제개발국으로 우뚝 선 베트남을 보고 우리 기업이 보다 많이 진출해 교류와 협력이 잘 되어 나가길 기원했습니다.

김태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월 15일부터 발효된 한·콜롬비아 FTA 협정에 대한 정보가 궁금했던 찰나에 해당 협정의 주요 내용 및 활용방안 기사를 접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율 적용 보상 조치 규정 등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을 알게 되어 좋았습니다.

한미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주)웰크론헬스케어의 인증수출자 발급에 관한 기사를 읽고 관련 품목을 수출준비 중인 지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서 가장 좋았습니다.

이윤정 경북 경산시 대학로

# 함께하는 FTA

August 2016 / vol.51 www.fta.go.kr

## 알림

독자엽서를 이메일로도 받습니다.  
보내시는 분의 이름, 주소, 연락처와 엽서의 질문 답변  
내용을 적어서 agami2@korea.kr로 보내주시면,  
좋은 의견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기존처럼 우편엽서로 보내셔도 됩니다.

함께하는 FTA

## 독자엽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E-mail

□□□□□

전화번호

받는 사람

〈함께하는 FTA〉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2동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3 0 1 1 8



〈함께하는 FTA〉는 독자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는 열린 공간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 하나하나가 〈함께하는 FTA〉를 만들어가는 에너지입니다. 소중한 의견을 8월 23일까지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들에게 정성껏 마련한 선물을 드립니다.

〈함께하는 FTA〉를 보신 소감은?

이번 호에서 가장 좋았던 기사는 무엇이었나요?

이유를 적어주세요.

〈함께하는 FTA〉를 어디에서 보셨나요?

예) 은행, 관공서, 도서관 등

〈함께하는 FTA〉에서 다뤘으면 하는 내용은?

(또는 FTA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것은?)

정기구독(무료) 신청을 빕습니다.

신규 독자 신청 또는 기존 독자 주소 변경은  
성명, 주소, 연락처를 기재하여  
이메일(agami2@korea.kr)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호에 좋은 의견을 보내주신  
아래 분들께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함께하는 FTA〉 7월호  
독자 이벤트 당첨자 명단

김형균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강선미 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김휘곤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한미정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전승종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흥로

김태완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이갑수 전남 장성군 삼계면 월연리

이윤정 경북 경주시 대학로

임한솔 서울시 관악구 봉천로

김경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중앙로

※독자엽서 당첨상품 반송 시 1년 간  
(우체국 배송자료 보관 시한) 보관합니다.

# 무역인의 고민해결사 트레이드내비

tradenavi.or.kr



TradeNAVI는 중소 · 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구축 · 서비스 중인  
국가무역정보포털입니다.

01  
통관정보

전 세계 주요 49개국의 관세 및 수입제도 등 수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  
- 관세, 비관세장벽(인증, 규제 등), 무역통계, FTA정보

02  
해외마케팅  
정보

161개 재외공관, 122개 무역관, 무역협회 해외지부에서 수집되는 생생 해외시장정보  
무역협회, 중진공, KOTRA, 무보공이 제공하는 약 68만건의 해외기업정보  
tradeKorea, buyKorea, Gobizkorea, EC21에서 통합 수집된 해외오피정보  
- 해외시장동향, 해외기업정보, 해외오피정보

03  
지원정보

국내 48개 무역지원기관에서 수집한 각종 수출지원제도의 연간계획을 일자별로  
한눈에 제공  
- 무역사절단,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설명회 및 수출 상담회, 무역정보 안내지도

04  
무역애로  
해소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의사항을 속시원히 풀어주는 무역애로정보  
- 무역실무 상담, FTA 상담, 전문가 상담, 애로사항 공유

# FTA 활용과 인증 표준 업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FTA무역종합지원센터

**1380**

국내외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전국 어디서나  
**FTA 콜센터 1380,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FTA 콜센터 1380과 인증 표준 콜센터 1381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보다 빠르고 보다 편리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 FTA 콜센터 1380

FTA 협정별·품목별 원산지 증명서 작성,  
사후검증 대응,  
원산지시스템 구축 상담 등  
FTA 전문 컨설팅 서비스 제공



#### ▶ 인증 표준 콜센터 1381

350여 개의 해외인증과 300여 개의 국내 인증 및  
4만 3천여 개의 표준 정보를  
수요기업이 요구하는 품목별·국가별  
맞춤형 정보로 가공해 제공